

개성공단 생산 제품 수출 관련 주요국의 무역제도

- 주요국의 원산지 규정
- 주요국별 한국과 북한에 대한 차별대우 현황

2005. 9.

KOTRA 동북아팀

= 목 차 =

■ 유럽

I. EU.....	1
II. 스위스.....	6
III. 노르웨이.....	8
IV. 터키.....	10

■ 북미

I. 미국.....	13
II. 캐나다.....	22

■ 아시아

I. 일본.....	28
II. 중국.....	31
III. 대만.....	63
IV. 싱가포르.....	66
V. 인도.....	68
VI. 인도네시아.....	70
VII. 태국.....	72
VIII. 베트남.....	74
IX. 필리핀.....	76
X. 말레이시아.....	77
XI. 파키스탄.....	79
XII. 미얀마.....	80
XIII. 방글라데시.....	80

■ 대양주

I. 호주.....	81
II. 뉴질랜드.....	84

■ 중남미

I. 브라질.....	86
II. 콜롬비아.....	89
III. 페루.....	90
IV. 칠레.....	91
V. 멕시코.....	92
VI. 파나마.....	97

■ CIS지역

I. 러시아.....	98
II. 우크라이나.....	109

■ 중동 및 아프리카

I. U.A.E.....	110
II. 요르단.....	111
III. 이집트.....	113
IV. 이란.....	116
V. 사우디아라비아.....	119
VI. 나이지리아.....	119
VII. 남아프리카공화국.....	120
VIII. 쿠웨이트.....	122

■ 유 럽

I. EU

1. EU의 원산지 기준

가. 근거 법규

- 근거법규 : Commission Regulation No 2454/93 laying down provis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No 2913/92 establishing the iCommunity Customs Code (L 253, 1993.19.11), Title IV, Chapter 1

- 동 법규에 특혜 및 비특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모두 포함한, 일종의 통관 규정임

나. 일반 상품의 원산지규정(비특혜규정)

- 기본 원칙

-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부속서 9)
- 이때 최종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함(부속서 20-24조)

- 부속서 11상에 언급된 품목의 경우 품목별로 열거된 기준을 준수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됨

<별도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공산품 리스트(농산물 제외)>

HS	품목명
ex3401	Felt and non-wovens, impregnated, coated or covered with soap or detergent
ex3405	Felt and non-wovens, for footwear, furnish, floors, galss
ex3502	Dried egg albumin
ex4203	Articles of apparel of leather or of composition leather

ex4910	Ceramic calendars
6401-6405	Footwear
ex6911-ex6913	Ceramic tableware, kitchenware, othe household
ex7117	Ceramin imitation jewellery
ex8482	Ball, roller or needle roller bearings
ex8520	Magnetic tape recorders
ex8527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ex8528	Television receivers
ex8542	Integrated ciecuits
ex9009	Photocopying apparatus
ex9113	Watch straps, watch bands and watch bracelets, and parts thereof, of textile
ex9401, ex9403	Ceramic seats
ex9405	Ceramic lamps and ceramic lighting fittings

다. 섬유류 비특혜 원산지 기준

- 기본원칙 : 가공도 원칙(수입원재료와 완제품의 HS 4단위가 변경되어야 함)
- 단, 부속서 10상의 섬유 및 섬유제품은 각 품목별로 열거된 기준을 준수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됨
- 단, 다음 공정은 HS 4단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에 불충분한 공정으로 간주됨
 -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좋은 여건에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공정(ventilation, spreading out, drying, removal of damaged parts and like operations)
 - 먼지 제거, 조리질(sifting), screening, sorting, 분류, matching(제품 세트 구성을 포함), 세탁, 커팅 공정을 포함한 단순 공정
 - 포장 및 breaking-up 변화, assembly of consignment
 - 포장,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는 것을 포함한 단순 포장공정
 - 마크, 라벨 및 다른 유사한 구별 사인을 제푸이나 포장에 부착하는 공정
 -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것
 - 상기 공정을 조합하는 것

라. 부품(spare parts)에 대한 원산지기준

- 장비와 기기의 부분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은 장비의 해당 부분과 같은 원산지로 간주됨

마. 특혜무역에 대한 원산지 기준

- EU 집행위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혜무역 원산지기준은 일반무역특혜제도(GSP), Occupied Territories(가자지구, River Jordan 지역에 적용),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구유고연방국가에 대한 원산지기준임.

- 이외에도 특정 국가와의 양자간 협정을 통해, 해당 특혜무역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양자간 관계에만 적용됨

○ GSP 원산지기준

- 충분한 가공(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보며, 이때 충분한 가공이란 원칙적으로 수입 원자재와 이를 사용해 만들어진 완제품간의 HS 4단위가 바뀐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함께 EU 집행위 결정 부속서 15를 통해, HS 4단위가 바뀌지 않아도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과 그 조건을 열거하고 있음.

- 부속서 15상에 규정된 품목과 기준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동일 사례인 부속서 11과는 다름

바. EU 원산지 기준관련 웹사이트

- EU 집행위내 사이트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customs/information_notes/originwhatis_en.htm

2. 한국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없음

- EU는 북한에 대해 별도의 차별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및 대북한 관세율에 차이가 없음

○ 북한산 섬유수입 제한 규정 : 북한산 섬유제품은 1)수입이 자유로운 품목, 2)쿼터 적용 품목, 3)(실질적) 수입 금지 품목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음

- 대북한 쿼터 적용 품목

- '05.1.1부터 섬유쿼터제가 전면 폐지되었으나, EU는 WTO 비회원국인 북한에 대하여 섬유쿼터를 유지
- 2005년 대북한 수입쿼터는 2004년 쿼터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2004년과 마찬가지로 48개(카테고리 기준) 섬유 및 의류에 대해 EU로부터 수입쿼터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품목별로 수입업자(operator)당 수입상한수량도 설정되어 있음.
- 수입쿼터 대상 품목 및 2005년 쿼터량

카테고리	품목명	단위	쿼터량
1	면사	톤	128
2	면직물	톤	150
3	합성편직물	톤	81
4	셔츠,폴로	천 piece	289
5	저지, 폴오버	천 piece	188
6	남자용 편직바지	천 piece	218
7	여자용 셔츠, 블라우스	천 piece	97
8	남자용 셔츠(니트제외)	천 piece	302
9	테리타올	톤	71
12	스타킹, 타이즈	천 pair	1,308
13	남자용 내의	천 piece	1,509
14	남자용 오버코트, 우비	천 piece	154
15	여자용 편직 오버코트, 우비	천 piece	175
16	남자용 앙상블, 슈트(니트 제외)	천 piece	88
17	남자용 자켓	천 piece	61
18	남자용 조끼	톤	61
19	손수건	천 piece	411

20	베드린넨	톤	142
21	파카, 아노락, 방풍복	천 piece	3,416
24	남자용 나이트셔츠, 파자마	천 piece	263
26	여자용 드레스	천 piece	175
27	여자용 스커트	천 piece	288
28	바지	천 piece	286
29	여자용 앙상블, 슈트(니트 제외)	천 piece	120
31	브래지어	천 piece	293
36	편직물(artificial fibres제)	톤	95
37	편직물(artificial staples fibres)	톤	378
39	테이블린넨, 주방린넨	톤	51
59	카펫	톤	466
61	Narrow woven fabrics	톤	40
68	유아용 의류	톤	120
69	여자용 슬립, 패티코트	천 piece	184
70	스타킹(67 decitex 이하)	천 piece	270
73	편직, 크로텍직물제 트랙슈트	천 piece	149
74	여자용 니트제 슈트와 앙상블	천 piece	133
75	남자용 니트제 슈트와 앙상블	천 piece	39
76	남자용 작업복	톤	120
77	스키복	톤	14
78	Garments	톤	184
83	스키복, 오버코트	톤	54
87	장갑	톤	8
109	sunblinds 류	톤	11
117	ramie제 편직물	톤	51
118	ramie제 테이블린넨	톤	23
142	카펫(sisal제)	톤	10
151a	바닥갈래(coconut fibres)	톤	10
151b	카펫(황마)	톤	10
161	기존 Cat.에 포함되지 않는 Garments	톤	152

자료원 : SIGL

- (실질적) 수입 금지 품목

- 63개 카테고리의 북한산 섬유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간 수량한도 (annual quantitative limits)가 설정되는 경우에 한해 EU지역으로 수입될 수 있다고 규정

* Council Regulation No 517/94 Article 3(3)

(http://europa.eu.int/eur-lex/en/consleg/pdf/1994/en_1994R0517_do_001.pdf)

- 그러나, 상기 63개 품목에 대해 연간 수량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대상품목 : 10, 22, 23, 32, 33, 34, 35, 38, 40, 41, 42, 49, 50, 53, 54, 55, 58, 62, 63, 65, 66, 67, 72, 84, 85, 86, 88, 90, 91, 93, 97, 99, 100, 101, 111, 112, 113, 114, 120, 121, 122, 123, 124, 130, 133, 134, 135, 136, 137, 138, 140, 141, 145, 146A, 146B, 146C, 149, 150, 153, 156, 157, 159, 160 등 63개 카테고리

- 기타 EU의 대북한 제재조치 : 없음

- 지난 2000년 작성된 EU의 "2001-2004년 EU의 북한 Country Strategy"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교역 여건이 호전되면 북한에 대해 GSP 혜택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may)고 밝히고 있으나, 이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은 없음

3. EU의 대북한 관계에 대한 웹사이트 주소

- EU 집행위의 대북한 양자관계 사이트 :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north_korea/intro/index.htm

II. 스위스

1. 스위스의 원산지기준

- 원산지 규정 법령체계

- Federal Law on Custom(Zollgesetz), Art.7., Para.2:

- * http://www.admin.ch/ch/d/sr/631_0/a7.html

- Regul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Origin(Verordnungberdie Ursprungsbezeichnung, VUB), SR946.31

- Regulation on the preferred custom tariffs in favour of developing

countries(Zollpraferenzverordnung)

* http://www.admin.ch/ch/d/sr/632_911/

○ 주요 내용

- 동규정은 무역거래되는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 발급기관, 양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은 100% 또는 충분한 가공(수입부품의 가격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이 인정될 경우임.
- 증명서 발급기관 : The State Secretary of Economic Affairs (SECO)
- * 원산지규정 pdf화일 : <http://www.admin.ch/ch/d/sr/9/946.31.de.pdf>

2. 한국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스위스도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에 대해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제도에 따라 우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농업 및 화학제품에 대해 우대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요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0203 /0207/0210: meet from animals, poultry, dried meat
0704 /0709/ 0713: vegetables: cowl, other vegetables, pulse
1108: starch
1207: oilseeds
1515: vegetable oils
1702: sugars and molasses
2004: pickled vegetables
2008 /2009: preserved fruits and plants
2905: alcohols
3506: glues
3823: technical fatty acids

* 자료원: http://www.admin.ch/ch/d/sr/632_911/

- 그러나, 섬유류, 의류, 신발, 가방, 완구, 고무·플라스틱제품, 신변장신구,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산과의 관세율 차이는 없음.

* 자료원: http://www.admin.ch/ch/d/sr/632_911/

3.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현황

- 북한에 대해 쿼터적용 품목은 없음.
-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북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4.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스위스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북한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 1995년에 Swiss Humanitarian Help (HH)가 식료품, 의류 원조활동을 한 바 있으며, 1997년부터는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3명의 국제적인 농업전문가와 1명의 SDC 직원이 빈곤퇴치, 경제혁 등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음.

<관련 웹사이트>

* SDC: www.deza.admin.ch

* EDA: www.eda.admin.ch

Ⅲ. 노르웨이

1. 노르웨이의 원산지 기준

가. 노르웨이의 원산지 규정 체계도

○ 제정 경위

- 개도국산 수입품에 GSP 수혜를 공여하기 위해 재무부의 발안으로 1971년 9월 3일 국왕의 제가를 얻어, 1971년 10월 1일 발효이후 수차례 개정(1988, 1998, 2001).
- 동 규정의 법적위치는 GSP 제도운영만을 위해 제정된 별정법임.
- GSP수혜국을 최빈수혜국과 일반수혜국(한국 포함)으로 2분화 운영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노르웨이는 HS code 1-23류 및 61-63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고, 여타품목은 무관세임.
- 따라서 최빈수혜국에만 관세가 면제되는 61-63류를 제외할 경우 GSP 제도가 실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여타 공산품의 경우 무관세임으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법령 구성 : 총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

- 제 1장 : 총칙 (제 1조 용어 정의)
- 제 2장 : 원산지 규정 (제 2조 제 11조)
- 제 3장 : 원산지적용 영토 및 운송등 (제 12조-제15조)
- 제 4장 : 원산지 증명 (제16조 제28조)
- 제 5장 : 행정관리등 (제29조 제 31조)
- 제 6장 : 보칙 (제 32조 35조)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

○ 기본원칙

- 해당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상품.
- 수입물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충분한 가공을 거친 상품 (Processing List를 통해 품목별로 충분한 가공내역을 규정하고 있음. 통상 HS번호의 끝 4단위가 변경된 경우 인정)

○ 보완규정

- 지역별 합산 인정 : GSP 수혜국간에 지역경제블럭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동 블럭소속 국가의 원료를 수입,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 원료를

-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 노르웨이산 원료 합산인정 : GSP 수혜국산 제품이 노르웨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 EU 및 스위스산 원료 합산인정 : GSP 수혜국산 제품이 EU나 스위스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국산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단, HS 1-24류는 제외)

다. 관련 웹사이트 : www.toll.no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한 국 : 일반 GSP 수혜국으로 분류
- 북 한 : GSP 수혜 대상국에서 제외, 일반 관세율 적용
- 현 황
 - 노르웨이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HS 세번기준으로 1-23류의 농수축산물 등 1차 상품, 3823류, 61-63류의 섬유제품뿐이며, 여타 품목은 무관세임
 - 또한 한국이 속해있는 일반GSP 수혜국에 부여하는 관세감면 혜택도 1-23류까지의 1차 상품이며, 동 혜택도 100%, 50%, 15%, 10%등으로 품목군별로 세분화되어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1차 상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경우 일반 GSP 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과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북한산과의 관세율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나.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현황

- 노르웨이는 자국의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농산물 및 축산물에 대해서만 계절별 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여타 쿼터제도는 없음.
-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쿼터는 없음.

다. 기타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라.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toll.no

IV. 터키

1. 터키의 원산지 기준

가. 원산지 규정 체계도 (법령체계)

- 해당법규 : 터키 관세법 # 4458

- 체계도
 - 상기 법규는 1999년 제정되었으며, 동 법규를 근간으로 세부 시행세칙이 관보를 통해 수차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최근의 관련 관보는 2001년에 발표된 것임.
 - 따라서 '원산지 규정'의 체계는 상기 법규를 근간으로 세부 시행세칙은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임.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

1) 내용요약

가) 양국간 협정으로 정한 혜택 수혜를 위해 필요

- 원산지 증명의 제출은 선택사항임. 하지만 터키 정부가 부여하는 특혜 혹은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이 필요.
- 각종 특혜 및 관세인하의 혜택은 터키정부와 해당국간의 상호 협정에 의해 규정된 바에 따름. 예를 들어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거의 모든 품목(93%의 품목)의 수출입 관세가 없는 상태임. 따라서 무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이 필요함.

나)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의무화

- 터키가 셰이프가드, 쿼터,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하는 나라의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다) 특혜/비특혜 부여 여부

- 상기한 내용 외에 원산지에 따라 특혜나 비특혜를 부여하지는 않

고 있음.

다.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gomruk.gov.tr (터키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터키 관보 열람가능)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터키는 한국과 북한을 관세부과 대상 국가 중 동일한 카테고리 (기타 국가)에 포함시키고 있는 관계로 관세율이 동일하고, 남북한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고 있음.

3.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터키는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고 있음.
- 2005년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부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카테고리 번호	품목명	단위	2005년 쿼터량	1회 수입신청 가능량
1	cotton yarn	kg	13,000	4,000
2	woven textiles made of cotton	kg	15,000	5,000
3	woven textiles made of synthetic	kg	5,000	2,500
4	knitted T-shirt, undershirt etc.	piece	29,000	8,500
5	knitted S-shirt, pullover, sweater etc.	piece	12,000	4,000
6	woven trousers and shorts	piece	14,000	4,000
7	women shirts and blouses	piece	9,000	3,000
8	men shirts	piece	13,000	4,000
9	cotton terrycloth textiles	kg	7,000	2,500
12	socks	pair	129,000	20,000
13	knitted pants and slippers	piece	151,000	20,000
14	woven men coats and topcoats	piece	9,000	3,000
15	woven women coats and topcoats	piece	11,000	3,500
16	woven men suits	piece	6,000	2,500
17	woven men jackets and blazers	piece	5,000	2,500
18	woven underwear, pyjama and bathrobes	kg	6,000	2,500
19	woven handkerchiefs	piece	41,000	10,000
20	woven bed sheets	kg	14,000	4,000
21	woven parkas, windcheaters etc	piece	20,000	7,500
24	knitted pyjamas, bathrobes etc	piece	26,000	8,000
26	women dresses	piece	17,000	5,000
27	women skirts	piece	17,000	5,000
28	knitted trousers	piece	29,000	8,500
29	woven women suits	piece	8,000	3,000
31	brassieres	piece	29,000	8,500
36	textiles made of artificial filaments	kg	9,000	3,000

37	woven textiles made of artificial discontinuous fibres	kg	36,000	10,000
39	woven tablecloths etc.	kg	5,000	2,500
59	carpets, other floor coverings	kg	47,000	10,000
61	woven bands	kg	5,000	2,500
68	woven baby wear and accessories	kg	8,000	3,000
69	knitted women chemises, undershirts	piece	18,000	5,000
70	panthy socks made of	piece	27,000	8,500
73	knitted sports wear	piece	9,000	3,000
74	knitted women suits	piece	13,000	4,000
75	knitted men suits	piece	5,000	2,500
76	woven job wear	kg	7,000	3,000
77	woven ski wear	kg	2,000	1,000
78	other woven wear	kg	12,000	4,000
83	other knitted wear	kg	3,000	1,500
87	gloves-not knitted and crocheted	kg	1,000	500
109	awnings, cloths, camping materials	kg	2,000	1,000
117	textiles woven from linen and rami	kg	5,000	2,500
118	woven linen and rami table cloths	kg	2,000	1,000
142	floor coverings from	kg	2,000	1,000
151a	floor coverings from coco fibres	kg	2,000	1,000
151b	floor coverings from jute	kg	2,000	1,000
161	other woven wear	kg	15,000	5,000

* 출처: 터키섬유수출자협회(ITKIB, www.itkib.org.tr),
터키관보 (2005년 1월 7일 #25693)

4.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특이사항 없음.

■ 부 미

I. 미국

1. 미국의 원산지 규정

□ 미국의 원산지 규정 체계도

- 미국 관세법, 1930년 관세법 304항(19 USC 1304)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수입 모든 물품에 원산지 규정을 표시할 것을 규율함

- 미국이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Made in USA 관련 규정은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규정

□ 원산지 규정 내용

1. 1930년 관세법 304항 내용

- 1930년 관세법에 의하여 미국 세관과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의 요건

- 미국내 최종 구매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어야함
- 원산지의 국가명은 영어로 되어야 함
- 원산지 표시는 물품의 적절한 위치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기 되어 부착 되어야함

- 법규정

- 19 USC § 1304. Marking of imported articles and containers

(a) **Marking of articles**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every article of foreign origin (or its container, as provided in subsection (b) hereof)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shall be marked in a conspicuous place as legibly, indelibly, and permanently as the nature of the article (or container) will permit in such manner as to indicate to an ultimate purchaser in the United States the English name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articl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by regulations –

- 수입 물품이 복수 국가에서 조립 되거나 생산 되는 경우의 원산지 결정의 기준
 - “Substantial Transformation” : 실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함
 - * 각종 판례를 통해 성립된 이론

- 실질적 변형은 제조 과정을 통해 이전의 모양, 이름, 사용 방법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 미 세관은 일괄적인 기준보다는 개별적인 고려를 통해 실질적 변형 유무를 판단
- 북한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31 CFR 500.204)
- 북한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마무리공정(Grading, Testing, Checking, Shredding, Peeling 등 33종 유형, 법규 참조)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를 북한으로 간주
 - 제3국 생산품도 북한산 자수, 바느질 제품, 레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품이 첨가될 경우 원산지를 북한으로 간주
 - 관련 법규: 31 CFR 500.204 Importation of and dealings in certain merchandise.

(a)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r any person, agency, or instrumentality designated by him) by means of regulations, or rulings, instructions, licenses, or otherwise, person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may not purchase, transport, import, or otherwise deal in or engage in any transaction with respect to any merchandise outside the United States specified in following paragraph (a) (1) of this section.

(1) Merchandise the country of origin of which is North Korea, North Viet-Nam, Cambodia, or South Viet-Nam. Articles which are the growth, produce or manufacture of these areas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o be merchandise whose country of origin is North Korea, North Viet-Nam, Cambodia, or South Viet-Nam, notwithstanding that they may have been subjected to one or any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processes in another country:

- (i) Grading; (ii) testing; (iii) checking; (iv) shredding; (v) slicing; (vi) peeling or splitting; (vii) scraping; (viii) cleaning; (ix) washing;

(x) soaking; (xi) drying; (xii) cooling, chilling or refrigerating; (xiii) roasting; (xiv) steaming; (xv) cooking; (xvi) curing; (xvii) combining of fur skins into plates; (xviii) blending; (xix) flavoring; (xx) preserving; (xxi) pickling; (xxii) smoking; (xxiii) dressing; (xxiv) salting; (xxv) dyeing; (xxvi) bleaching; (xxvii) tanning; (xxviii) packing; (xxix) canning; (xxx) labeling; (xxxi) carding; (xxxii) combing; (xxxiii) pressing; (xxxiv) any process similar to any of the foregoing. Any article wheresoever manufactured shall be deeme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to be merchandise whose country of origin is North Korea, North Viet-Nam, Cambodia, or South Viet-Nam, if there shall have been added to such articles any embroidery, needle point, petit point, lace or any other article of adornment which is the product of North Korea, North Viet-Nam, Cambodia, or South Viet-Nam, notwithstanding that such addition to the merchandise may have occurred in a country other than North Korea, North Viet-Nam, Cambodia, or South Viet-Nam.

2. "Made in USA" 표시 가능한 경우

- 자동차와 섬유제품은 최종생산품이나 부품 등의 미국산 여부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America Automobile Labeling Act
 - * 1994년 10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 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생산지 등을 표시하여야 함
 - 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 Wool Product Labeling Act
 - * 섬유나 울 제품의 경우 최종 생산 지역이 미국인 경우 미국산 표시 의무
 - Fur Products Labeling Act
 - *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죽, 모피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모든 레이블과 광고에 명기하여야 함
 - Buy American Act
 - *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하여야 함
- 타제품의 경우, 특별한 법규정 없음
- 관세법과 특별법이 정하지 않는 모든 상품은 Federal Trade

Commission(FTC)이 규율

- Made in USA를 표시하고 싶은 제조업자들은 FTC의 규정 준수 요구
- 관세부과를 위한 외국산 표시가 없는 모든 물품에 적용
- Made in USA 표시가 허용되는 기준: “all or virtually all”
 - 상품의 모든 부분 또는 거의 모든 부분이 미국 영토 안에서 만들어질 것을 요구
- 판단요건
 - 최종 조립단계 또는 생산단계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
 - 최종 제품의 비용계산이 미국산 부품과 미국내 생산 활동을 근거로 할 것
 - 외국산 부품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함
- * 예) 가스그릴에서 손잡이 부분이 외국산인 경우 -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봄
- Made in USA의 대체 형태
 - USA
 - Our Products are American made.

3. "Made in USA" 표시와 추가적 설명 요하는 경우

- "All or virtually All"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모든 제품이나 과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60% USA
 - Made in USA of US and imported parts
 - Couch assembled in USA from Italian Leather and Mexican Frame
- 특수한 공정이나, 부품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 “produced”, “created”, “manufactured”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함
 - 예)
 - 1) 디자인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제품이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경우
 - * Designed in USA - Made in Finland
 - * 관세법에 의거하여 Made in, 또는 Product of 외국 국가명을 사용하여야 함
 - * Created in USA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음
 - 2) 소프트웨어 경우

- * Software written in US - Disk made in India
- 3) 컴퓨터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서 포장하는 경우
- * Computer Made in Korea - Packing Made in USA

4. "Assembled in USA"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미국에서 행하여진 경우
- Substantial transformation
 - 최종 생산품의 주요 조립 공정이 미국 영토 안에서 행하여질 것
 - 이 공정을 통해서 수입 부품들의 명칭, 성질, 사용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함
 - 단순한 조립과정(Screwdriver operation)을 통한 최종생산품 조립은 해당 되지 않음
 - 예)
 - 1) 컴퓨터의 경우, 머더보드, 하드드라이버를 수입되어 단순한 Screwdriver operation을 통해 컴퓨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아니라고 봄.
이 경우, 관세법에 의거 수입한 국가 명을 표기하여야 함
 - 2) 러닝머신의 경우, 모터, 기본 몸체, 전자식 모니터는 수입제품이고, 매트, 손잡이 커버, 안전장치 등이 미국제품인 경우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는 경우로 봄
이 경우 Assembled in USA라는 마크를 표시 할 수 있음

상기 내용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http://www.cbp.gov/linkhandler/cgov/toolbox/publications/trade/markingo.ctt/markingo.doc>

<http://www.ftc.gov/bcp/online/pubs/buspubs/madeusa.htm>

나.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 대우 현황

관세율

- 미국은 WTO 회원국에게는 정상교역국 (NTR: Normal Trade Relation)으로 관세율표의 Column 1 세율을 적용
 - 우리나라는 정상 교역국으로 Column 1 관세 적용
 - 북한의 경우, 경제 제재 대상국, 비정상 교역국으로 Column 2 관세율 적용
 - Column 2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수십배까지 차이가 있음
- [참조] 북한의외 Column 2 관세율 적용받는 국가는 쿠바, 라오스 임
 쿠바는 WTO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Column 2 적용 (적성국가로 분류)

[주요 품목별 Column 1 / Column 2 관세율 비교]

업종	HTS 코드	품목	관세율	
			Column 1	Column 2
의류 및 섬유류	420310	혁제 의류	4.7/6*	35
	610620	인조섬유제 여자용 블라우스 셔츠	14.9/32	54.5/72
	610910	면제 T 셔츠	16.5	90
	610990	방직용섬유제 T셔츠, 싱글니트 등	2.6~32**	55.5/90
	611030	인조섬유제 저지, 폴오버, 가디건 등	6~32	35~90
	611592	면제 스타킹, 양말	0~13.5	40/51/90
	620193	인조섬유제 남자용 아노락, 스키자켓	4.4~27.7	58.5~90
	621510	넥타이	7.2	65
	620530	인조섬유제 남자용 셔츠	12.2~25.9	45~76
650590	기타 모자	1.1~7.1	35~65	
신발	640299	기타 신발	3~48	35~84
	640399	기타 신발	5~10	20
	640411	스포츠화	10.5~48	35~84
	640699	신발 부분품	0 / 5.3 / 14.9	15~80
가방	420212	트렁크, 슈트케이스	5.7~20	40/65
	420222	핸드백	5.7~17.6	40~90
완구	950390	기타 완구	0	70
	950341	속이 채워진 완구	0	70
고무	401110	승용차용 공기타이어	3.4 / 4	10
	401120	버스, 화물차용 공기타이어	3.4 / 4	10
플라스틱	392690	플라스틱제 제품	0~6.5	25~80
	392310	플라스틱제 상자 케이스	3	80
	391810	염화비닐제 바닥 깔재, 벽피복재 등	4.2~6.5	25~84.5
기타 경공업품	732393	스텐레스제 식탁, 부엌용품	2	40
	761519	알루미늄제 식탁, 부엌용품	3.1	45.5
	821599	기타 부엌, 식탁 용품	0~15.8	40~65
	960810	볼펜	5.4	40
	392610	플라스틱제 사무용품, 학용품	5.3	80
	900319	안경테	0	50
신변 장신구	711319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5~7	80
	711719	비금속제 모조신변장식용품	0~11	45 / 80 / 110

자동차 부품	870899	자동차 부품	0~2.5	0~25
	870829	자동차 차체 부품	2.5	25
컴퓨터 부품	847330	컴퓨터 부품	0	35
	847160	컴퓨터 입출력 장치	0	35
	847170	컴퓨터 기억장치	0	35
전기 및 전자 제품	841510	에어컨	0~2.2	35
	841810	냉장, 냉동고	0	35
	845011	세탁기	1.4	35
	850490	변압기	0~3	35
	850910	진공청소기	0	35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2	35
	852190	영상기록, 재생용 기기	0	35
	852313	마그네틱 테이프	0	80
	852731	라디오 수신기	0~4.9	35
	852812	컬러 TV	0~5	25 / 35
	854011	TV용 음극선관	7.5 / 15	60
854121	트랜지스터	0	35	

자료원: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2005)

참조 : *: 4.7 / 6은 HTS 6단위 이하 세부품목의 관세가 4.7% 또는 6% 임을 의미

** : 4~32는 HTS 6 단위 이하 세부품목 관세가 4~32% 사이에 다수 존재함을 의미

□ 쿼터

- 북한과는 정상적인 교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쿼터에 대한 규정 없음

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현황

□ 개요

- 미국 정부는 적성국교역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하의 해외자산관리령 (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을 근거로 북한에 대해 1950년부터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해외자산관리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의 관리를 받고 있음
- 관계 규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회사의 경우는 백만 불 이하의

벌금, 개인의 경우 25만 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민사법적 벌금이 5만5천불까지 더해 질수 있음

□ 북한산 제품의 수입규제 등 규제사항

- 북한산 제품의 수입은 재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기수출통제법 73조 및 74조를 근거로 연방 규정 (Federal Regulation) 31 CFR Part 500은 북한에서 직접,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OFAC의 허가가 없는 한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
- 예외조항
 - 31 CFR 500.206에 의하면 31 CFR 500.303조항에서 규정한 “Information Materials”을 수입하는 경우, OFAC 보고가 면제됨
 - 31 CFR 500.332에서 규정하는 “Information Materials”
 -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사진, Microfilm, Microfiche, 테이프, CD, CD Roms, HTS 9701,9702,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 시사보도(News Wire Feeds)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북한 출판물, 포스터 등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함
- 북한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OFAC에 보고하여야 함
 - 미국측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수입물품 정보, 수입물품의가격 및 수입량
 - 북한측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 물품 제조장소, 북한 측 수출업자의 이름 및 주소
 - 수입 물품이 미 국무부에서 정한 미사일 기술 관련 업체 또는 개인에 의해 제조되는가의 여부
 - 수입 물품이 북한 정부의 미사일 관련 장치 및 기술과 관련된 행위에 의해서 제조되는가의 여부
 - 수입 물품이 북한 정부의 전자제품, 우주개발 장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생산, 연구 등의 행위에 의해서 제조되는가의 여부
- 상기 정보를 다음의 주소로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
 - North Korea Unit,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Department of Treasury
1500 Pennsylvania Ave. NW, Annex Washington D.C. 20220

- 북한 물품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을 인수한 미국내 금융기관은 수입업자로부터 OFAC가 발행한 허가서를 받아야만 관련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음
- 또한 OFAC의 허가서는 북한산 물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미 세관에 제출되어야함

□ 상기 내용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sanctions/t11korea.pdf>

II. 캐나다

1. 캐나다의 원산지 기준

□ 기본규정 : 캐나다 관세법(Canada Customs Act)의 35조(Origin of Goods : 제품의 원산지)

○ 요약

- 수입자(혹은 소유자, 대리인)는 지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해당 수입품이 해당 원산지로부터 수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추후 소정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FTA체결국들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에는 협정서에 명시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법령(<http://laws.justice.gc.ca/en/C-52.6/46715.html> 참조)

<p>35.1 (1) Proof of Origin</p>	<p>Subject to any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4), proof of origin, in the prescribed form containing the prescribed information and containing or accompanied by the information, statements or proof required by any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4), shall be furnished in respect of all goods that are imported.</p>
<p>35.1 (2) When furnished</p>	<p>Proof of origin of goods shall be furnished under subsection (1) to an officer at such time and place and in such manner as may be prescribed.</p>
<p>35.1 (3) Who furnishes</p>	<p>Subject to any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4), proof of origin of goods shall be furnished under subsection (1) by the importer or owner thereof.</p>
<p>35.1 (4) Regulations</p>	<p>The Governor in Counci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Finance, may make regulations <i>(a)</i> specifying persons or classes of persons who are authorized to furnish proof of origin of goods under subsection (1) in lieu of the importer or owner thereof and prescrib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nd the conditions, if any, under which such persons or classes of persons are so authorized; <i>(b)</i> specifying information required to be contained in, or to accompany, the prescribed proof of origin form in addition to the prescribed information and specifying any statements or proof required to be contained therein or to accompany that form; and <i>(c)</i> exempting persons or goods, or classes thereof, from the requirements of subsection (1) subject to such conditions, if any,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p>
<p>35.1 (5) Denial or withdraw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p>	<p>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 free trade agreement may be denied or withdrawn in respect of goods for which that treatment is claimed if the importer, owner or other person required to furnish proof of origin of the goods under this section fails to comply with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the <i>Customs Tariff</i>, or any regulation made under either of those Acts, concerning tha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p>

(자료원 : 캐나다 법무부)

□ 적용규정 : 캐나다 관세율(Canada Customs Tariff)의 16조(Rules of Origin : 원산지 규정)

○ 요약

- 원산지라 함은, 해당수입품의 생산에 따르는 전체비용(원자재, 인건비, 제조비, 관세 등 모든 비용)이 해당국에서 조달된 경우를 뜻한다.
- 의회의 장은 수입품의 원자재가 타국에서 조달 되어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공정의 경우, 제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타국에서 조달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관세적용을 위해 관세코드별로 원산지 결정기준(Memorandum)을 제정 - 뒷 표 참조)
- 만약 WTO 협약의 원산지 규정 및 기타 기준들과 불일치될 경우, 동 법이 상위법이 된다.
- 또한 의회의 장은 원산지 판단기준 동일성 유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자유무역협정으로는 NAFTA(캐나다-미국-멕시코), CCFTA(캐나다-칠레), CCRFTA(캐나다-코스타리카)를 들 수 있다.

○ 법령(<http://laws.justice.gc.ca/en/C-54.011/47613.html> 참조)

16 (1) Meaning or Originate	Subject to any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goods originate in a country if the whole of the value of the goods is produced in that country.
16 (2) Rules or Origin Regulations	(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make regulations (a) respecting the origin of goods, including regulations (i) deeming goods, the whole or a portion of which is produced outside a country, to originate in that countr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i) deeming goods, the whole or a portion of which is produced within a geographic area of a country, not to originate in that countr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not to be entitled to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therwise applicable under this Act,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are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and (iii) for determining when goods originate in a country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b) for determining when goods are entitled to a tariff treatment under this Act.
16 (2.1) Definition of Geographical Area	(2.1) In subsections (2) and 49.1(4), "geographic area" means any area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16 (3) Application of Rules or Origin Regulations	(3)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in Annex 1A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and any annex added to it under Article 9 of that Agreement, regulations made under subsection (2) may, if they so provide, prevail over any other regulations to the extent of any inconsistency.
16 (4) Uniform Regulations	(4) The Governor in Council ma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er, make regulations for the uniform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a) Chapters Three and Four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any other matters agreed on from time to time by the parties to that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at Agreement; (b) Chapters C and D of the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any other matters agreed on from time to time by the parties to that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at Agreement; and (c) Chapters III and IV of the Canad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and any other matters agreed on from time to time by the parties to that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at Agreement.

(자료원 : 캐나다 법무부)

■ 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코드별 원산지 결정기준(Memorandum)

Memorandum 번호	해당 관세코드	해당국가	관련 웹사이트	주요 내용
D11-4-3	MFN (Most Favoured Nation)	알바니아,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버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토리코, 산마리노, 사우디,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오만 등	http://www.cbsa.gc.ca/E/pub/cm/d11-4-3/d11-4-3-e.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생산비용(Ex-factory price :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51% 이상이 자국, MFN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MFN 관세 부여 ○ 주로 선진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D11-4-4	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바루다, 부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순시온,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리즈, 베네, 버뮤다,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지부티, 하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UAE, 기니아, 이디오피아, 페지, 가봉, 잠비아, 가나, 캄, 과테말라, 지브롤터, 온두라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차메이카, 요르단, 케냐, 한국 , 중국,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마카오, 유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도바,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루마니아,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위질랜드,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튀니지, 터키, 온가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주엘라, 베트남, 버진 아일랜드, 예멘, 잠비아 등	http://www.cbsa.gc.ca/E/pub/cm/d11-4-4/d11-4-4-e.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생산비용(Ex-factory price :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GP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GPT 관세 적용 ○ 가장 일반적인 관세코드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동남아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

Memorandum 번호	해당 관세코드	해당국가	관련 웹사이트	주요 내용
D11-4-4	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쉬, 부탄, 부르키나 파소, 브룬디, 캄보디아, 콩고, 지부티, 기니아, 이디오피아, 잠비아, 하이티,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서사모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투발루,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 주) LDCT에 속하는 국가들은 전부 GPT에 포함되어 있음. 이는 두 관세율중, 상기 국가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관세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생산비용(Ex-factory price :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41% 이상이 자국. LD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LDCT 관세 부여 ○ 주로 극빈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도상국 적용되는 관세율
D11-4-5	CCCT (Common Wealth Caribbean Tariff)	앙골라,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먼제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버진 아일랜드(영국령)	http://www.cbsa.gc.ca/E/pub/cm/d11-4-5/d11-4-5-e.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생산비용(Ex-factory price :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61% 이상이 자국, CCCT 국가들이나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CCCT 관세 부여 ○ 주로 영국령 국가들이나 중남미 도서국들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GPT 관세율과 거의 동일
D11-4-6	AUT NZT (Australia and New Zealand Tariff)	호주, 뉴질랜드	http://www.cbsa.gc.ca/E/pub/cm/d11-4-6/d11-4-6-e.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생산비용(Ex-factory price : 원자재비, 인건비, 세금 등 제품 생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의 51% 이상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부터 조달된 경우에 한해 호주는 AUT, 뉴질랜드는 NZT 관세 부여 ○ MFN에 비해 다소 낮은 관세율을 적용
-	GT (General Tariff)	북한, 미얀마, 리비아	http://laws.justice.gc.ca/en/C-54.011/47613.ht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nada Customs Tariff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들 ○ 관련 규정은 Canada Customs Tariff의 29조(General Tariff) 참조

* 참고 : FTA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관세코드

FTA명	관세코드	해당국가
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UST (United States Tariff)	미국
	MT (Maxico Tariff)	멕시코
	MUST (Mexico-United States Tariff)	미국-멕시코 공통
CCRTA (Canad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CRT (Costa Rica Tariff)	코스타리카
CCFTA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CT (Chile Tariff)	칠레
CIFTA (Canada-Israel Trade Agreement)	CIAT (Canada-Israel Agreement Tariff)	이스라엘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한국
 - 적용 관세율 : GPT
 - 10대 수출품목별 관세

(단위 : US\$)

연번	주요 품목(HS코드)	2001	2002	2003	2004	관세율
1	3000cc이하의 자동차(870323)	426,141,540	627,373,294	959,855,774	1,108,617,427	6.10%
2	휴대폰(852520)	174,432,236	299,030,295	461,923,251	521,611,331	무관세
3	선박(890590)	0	0	0	225,501,093	20%
4	반도체(854221)	0	138,984,198	128,964,352	177,565,913	무관세
5	3000cc 이상의 자동차(870324)	34,641,570	10,117,046	20,254,193	163,602,714	6.10%
6	자동차 부품(847330)	41,573,742	40,102,016	70,588,681	78,919,209	무관세
7	컴퓨터 기기(847160)	113,641,763	99,022,580	82,613,603	67,089,981	무관세
8	에어컨(841590)	48,194,823	31,235,800	35,480,609	50,865,390	무관세
9	집적회로(854210)	0	2,031,174	28,672,354	48,722,658	무관세
10	승용차용 타이어(401110)	32,852,539	33,730,810	42,577,078	47,422,031	7%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북한
 - 적용 관세율 : GT(전품목 35% 관세)
 - 10대 수출품목별 관세

(단위 : US\$)

연번	주요 품목(HS코드)	2001	2002	2003	2004	관세율
1	볼트, 너트류(731815)	0	0	0	8,689	35%
2	남성의류(521039)	0	0	0	4,122	35%
3	무선전화기(851711)		0	0	2,478	35%
4	전기 접화기기(851190)	0	0	0	1,794	35%
5	비디오, 오디오 부분품 (852290)	656	0	0	1,280	35%
6	기타 수송용 기기 (870390)	0	0	0	1,217	35%
7	조립키트(950320)	1,729	2,713	1,282	1,137	35%
8	기타 전기스위치(853650)	0	0	0	1,122	35%
9	신발류(640359)	0	0	0	738	35%
10	기타 운동용품(950691)	0	0	0	720	35%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 현재 캐나다는 전품목에 대하여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대캐나다 수출시 섬유 및 의류, 농산물, 철강품, 군용품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중 북한은 섬유 및 의류 수입허가만을 받은 상태임.
- 수입허가 취득은 주로 전문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제무역부(International Trade)의 수출입담당부서(Export and Import Controls Bureau)를 통해서도 취득 가능.
- 수입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US\$ 12-25 사이임.
- 관련자료 : www.dfait-maeci.gc.ca/eicb/general/permit-en.asp

대북한 경제제제조치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제제조치는 없으나 전품목 35%의 높은 관

세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였으며, 실제로 2004년 현재 대캐나다 수출실적은 US\$ 36,000을 기록하였음.

■ 아 시 아

I. 일본

1. 일본의 원산지 규정

가. 특혜 원산지규정

1) 개발도상국 특혜관세적용

가) 관련법령 : 관세잠정조치법

나) 주요내용 : 특혜관세적용대상국 규정 및 특혜를 제한 및 정지할 경우의 원칙

다) 홈페이지 : <http://www.houko.com/00/01/S35/036.HTM>

2) FTA협정체결국

나. 비특혜 원산지규정

1) 관련법령 : 관세법기본통달(關稅法基本通達)68-3-5

2) 주요내용

가) 협정(WTO)세율 적용 원산지 인정기준에 대한설명

나) 완전생산품 기준 및 실질변경기준에 대한 설명

3) 홈페이지 :

<http://www.cin.or.jp/kokusai/international/certification/siryou/21-KIHON.pdf>

다.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규정(일본 국내거래)

1) 관련법령 :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

2) 운용기관 :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3) 주요내용 : 소비자에 대해 정확한 상품정보(수입품의 원산지 표시)제시 등

4) 홈페이지 : <http://www.jftc.go.jp/keihyo/files/2/hyouji.pdf>

5) 참고사항

- 최근 일본에서 원산지 위반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섬유수입조합에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는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음. 동 매뉴얼은 세부품목별로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수입자가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거래처에도 원산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음.

2. 북한제품 관세율 현황

가. 북한제품의 관세율현황

- 국정세율적용 : 북한산 제품은 일본 통관시 국정(Statutory)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음. 즉,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이 적용받는 특혜(Preferential)세율이나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받는 협정(WTO)세율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음
- 국정세율적용국 : 북한외에 국정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는 동티모르, 안도라(Andorra) 2개국 밖에 없음

나. 품목별 관세율

- 직물의류(62류) : 기본세율(11.2%-16%), 협정세율(9.1%-10%), 특혜(무세)
- 전기제품(85류) : 무세

- 신발(64류) : 기본세율이 협정세율보다 2-3배 높은 편임. 특혜는 무세임
- 가죽제품(42류) : 기본세율이 4.1%-20%가량으로 협정세율보다 30%정도 높고, 특혜세율보다는 2배가량 높은 편임

3.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현황 : 없음

4. 평가

- 전기전자제품 등 기술집약적 품목의 경우 국가에 상관없이 관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북한산 제품은 품질열위로 수출이 저조함.
- 위탁가공 등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류, 신발 등 북한산 공산품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불리함

5.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가. 바세나르협약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제한

- 바세나르협약국인 일본의 경우 전략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음

나. 최근 동향

-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한 국내여론악화로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여론이 비등하나 6자회담등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실질적인 조치는 행해지고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일본입항 불허로 인해 대부분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북한선박의 일본입항이 불가해져서 교역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외국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아 면세 등의 혜택을 받았던 일본내 총련 소유의 각종 단체, 건물들에 대한 세금부과 방침이 각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II. 중국

1. 중국의 원산지 기준

- 주요 내용 : 원산지 조례, 수출-입 통합 시행(2005년 1월 1부 적용, 벌칙 조항 강화)
 - 중국은 종래 수출과 수입으로 이원화돼있던 원산지 조례를 2005년 1월 1일부터 통합 시행 하고 있음
 -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416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貨物原產地條例)를 공포
 - 이에 따라, 종래 10여년 이상 적용돼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 원산지 규칙》(中華人民共和國出口貨物原產地規則)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화물 원산지에 관한 잠정규정》(中華人民共和國海關關於進口貨物原產地的暫行規定)은 동일 부로 폐지됨
 -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원산지 조례는 非특혜성 무역조치와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확정에 적용됨
 - . 최혜국대우, 반덤핑 및 반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기관리, 국가별 쿼터제한, 관세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함. 특혜성 무역조치에는 원산지 조례가 적용되지 않음
 - 수출입화물 원산지 조례에 따르면, 하나의 수입화물내 원산지가 복수인 경우 원산지별로 각각 세관에 신고해야함. 수출화물의 화주는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CCPIT) 및 그 지방 분회에 원산지 증명을 신청함.
 - 이 조례는 벌칙 조항을 강화한 것이 특징적임. 허위자료를 제출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발급받거나 이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경우, 5,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증명을 악이용해 발생한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을 몰수하고 형사책임도 묻는 것으로 돼있다.

○ 관련 사이트 : www.customs.gov.cn(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6호

2004년8월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통과하여 현재 공포하고,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温家宝(Wen JiaBao)

2004년9월3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제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하고 여러 가지 무역조치에 대해 효율적으로 실시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최혜국대우, 반덤핑과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원산지표기 관리, 국가별 수량제한, 관세쿼타 등 비(非)우대성 무역조치 및 정부조달, 무역통계 등 활동에 있어 수출입화물원산지 확정에 적용된다. 본 조례는 우대성 무역조치의 수출입화물원산지확정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또는 참여한 국제조약, 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3조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은 해당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한 화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완성한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규정한다.

제4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화물이란 아래와 같다.

- (1) 해당 국가(지역)에서 출생 및 사육한 산 동물;
- (2) 해당 국가(지역)의 야외에서 붙잡거나 또는 수집한 동물;
- (3) 해당 국가(지역)의 산 동물에서 획득한 가공하지 않은 물품;
- (4)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확한 식물과 식물제품;
- (5) 해당 국가(지역)에서 채굴한 광물;
- (6) 해당 국가(지역)에서 획득하고 본 조 제(1)항에서 제(5)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천연적으로 생성한 물품;
- (7) 해당 국가(지역)의 생산과정에서 생성되어 방치해두거나 또는 회수하여 재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 (8) 해당 국가(지역)에서 수집한 복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또는 해당 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재료;
- (9)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선박이 그 영해이외의 해역에서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 물품;
- (10) 합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깃발을 건 가공선박에서 본 조 제(9)항에서 열거한 물품을 가공하여 획득한 제품;
- (11) 해당 국가 영해이외에서 전문채굴권을 향유하는 해역 또는 해저에서 획득한 물품;
- (12) 본 조 제(1)항으로부터 제(11)항까지에서 열거한 물품을 완전히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제5조 화물이 완전히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미소한 가공 또는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 (1) 운송, 저장기간에 화물을 보존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 (2) 화물의 하역에 편리하기 위한 가공 또는 처리;
- (3) 화물의 판매를 위한 포장 등 가공 또는 처리.

제6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변형에 대한 확정표준은 세척분류변경을 주요한 표준으로 한다. 세척분류변경이 실질적인 변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종가백분율, 제조 또는 가공 제조공정 등을 보충 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세척분류변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 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획득한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의 한 단계의 세목분류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종가백분율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非해당국가(지역)의 원재료에 대해 제조, 가공 후에 생성한 부가가치부분이 해당 화물가치를 초과한 일정한 백분율을 말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제조 또는 제조공정이란 한 국가(지역)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 화물의 기본특징을 부여하는 주요한 제조공정을 말한다.

WTO의 《非우혜원산지조화규칙》 실시 전, 수출입화물원산지의 실질적인 변형의 구체적 표준에 대한 확정은 해관총서에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함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화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에너지, 공장건물, 설비, 기계와 공구의 원산지 및 화물의 구성부분 또는 조립부품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화물과 동일하게 분류한 것은 그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포장화물의 원산지는 그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함께 수출입하는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화물과 같이 분류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9조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에 근거하여 화물과 함께 수출입된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한 것은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는 해당 화물의 원산지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다시 별도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의 원산지는 그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로 규정한다.

화물과 같이 수출입된 부품,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하였지만 정상적으로 분배한 종류와 수량을 초과한 것과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세칙》 중 해당 화물과 같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별지, 예비품, 공구와 소개설명용 자료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제10조 화물에 대한 임의의 가공 또는 처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덤핑, 반보조금과 세이프가드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이러한 가공과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제11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시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화물들의 원산지가 각각인 경우 별도로 원산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12조 수입화물을 수입하기 전, 수입화물의 수화인 또는 수입화물과 직접 관련된 기타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할 화물의 화물원산지에 대한 해관의 예비확정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원산지 확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반드시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한 서면신청 및 필요한 전부의 자료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본 조례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 예비확정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13조 해관은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후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원산지 예비확정결정을 한 화물을 예비확정결정을 한 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제로 수입할 경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며 본 조례규정의 원산지확정표준에 변화에 없는 것에 대해 해관은 해당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재확정하지 않으며 해관의 심사를 통해 실제 수입화물이 예비확정결정시의 화물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반드시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다시 심사 및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은 수입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확정시 수입화물의 수화인으로 하여금 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수출국의 관련기구에 대하여 화물의 원산지를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대외무역경영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근거로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입할 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확정의 행정처분을 미리 할 수 있으며 대외에 공포해야 한다. 동일한 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적용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원산지표기에 대해 관리를 실시한다. 화물 또는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한 것과 원산지표기가 명시된 원산지는 당연히 본 조례에 따라 확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한다.

제17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의 각 지역 출입경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기타 지역 분회(이하 발급기구라 약칭함)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출화물의 발송인이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기구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를 신고해야 하며 발급기구에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발급기구는 수출화물 발송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출화물의 원산지에 대해 심사 및 확인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을 발급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 반드시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발급을 거절해야 한다. 수출화물원산지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질량감독검험 검역총국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기구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20조 수출화물의 수입국(지역) 관련기구의 요구에 응하여 해관, 발급기구는 수출화물의 원산지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사상황에 대해 적시에 수입국(지역)의 관련 기구에 알려야 한다.

제21조 화물원산지확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단위, 개인의 허가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관, 발급기구는 반드시 해당 자료와 정보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22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화물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23조 허위자료를 통하여 수출화물의 원산지증명을 취득하거나 수출화물원산지증명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출입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은 5,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변조, 매매 및 절도하여 이를 해관통행허가증거로 할 경우 벌금부과 범위는 화물가치 이하로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하의 경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에 대해서 출입경검사검역기구 및 해관이 몰수하고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원산지표기가 본 조례에 따라 확정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시정 명령한다.

수출화물의 원산지 표기가 본 조례에서 확정된 원산지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관 , 출입경검사검역기구에서 시정 명령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 원산지확정 업무인원들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확정을 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남용, 직무무시 및 사리도모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소득에 대해 몰수하며 범죄구성과 관계가 있을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본 조례의 아래 용어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획득이란 포착, 조업, 수집, 수확, 채굴, 가공 또는 생산 등을 의미한다.

화물원산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확정된 한 화물을 획득한 국가(지역)를 의미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지역)에서 원산지규칙과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발급하고 해당 증명서에서 열거한 화물이 특정한 국가(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한 서면서류이다.

원산지표기는 화물이나 포장에서 해당 화물의 원산지를 명시한 문자와 도형이다.

제27조 본 조례는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1992년3월8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규칙》, 1986년12월6일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수입화물원산지관련 잠정규정》을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¹⁾

제122호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²⁾》은 2004년 11월 30일 세관총서 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오늘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모우신성(牟新生)

2004년 12월 6일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원산지 규칙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에 관한 규정

제1조 수출입 화물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무역정책 항목의 2개 이상 국가(지역)의 화물 생산에 참여하는 원산지를 확정하는데 적용된다.

제3조 수출입 화물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정된 표준의 확정은 세칙의 분류(歸類) 개정을 기본 표준으로 하며 세칙의 분류별 개정이 실질적 개정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종가백분율(從價百分比)과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등을 보충 표준으로 삼는다.

제4조 “세칙의 분류 개정” 표준이란 어떠한 국가(지역)에서 진행되고 해당 국가(지역)를 제외한 다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원자재로 제조 및 가공된 화물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3》 중의 네 자리 숫자로 표시된 납세항목(稅目)의 분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제5조 “제조 및 가공 공정” 표준이란 어떠한 국가(지역)에서 진행되고 제조 및 가공된 화물의 기본적 특징을 결정짓는 주요한 공정을 가리킨다.

제6조 “종가백분율”이란 어떠한 국가(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역)를 제외한 다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원자재로 제조 및 가공된 화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화물가치의 30%를 초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text{공장도가격} - \text{해당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자재 가격}}{\text{공장도 가격}} \times 100\% \geq 30\%$$

“공장도가격(工廠交貨價)”이란 제조공장이 생산한 완제품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해당 국가(지역)를 제외한 다른 국가(지역)를 원산지로 하는 원자재 가격(非該國(地區)原產材料價值)”이란 최종 생산품의 제조 또는 조립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원료 및 부품의 가격(원산지 불명의 원료 및 부품 포함)을 가리키며, 수입 “원가·보험료·운송비”가격 (CIF)으로 계산한다.

위에서 말한 “증가백분율”의 계산은 공인된 회계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 제조 및 가공 공정과 증가백분율을 표준으로 하여 실질적 개정 여부가 판정된 화물은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및 증가백분율 표준이 적용되는 화물 리스트⁵⁾》(첨부분서 참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열거된 표준에 따라 실질적 개정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및 증가백분율 표준이 적용되는 화물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화물의 실질적 개정에 대해서는 세칙 분류 개정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및 증가백분율 표준이 적용되는 화물 리스트》는 세관총서가 중국 상무부(商務部)와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공동으로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공고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서]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및 증가백분율 표준이 적용되는 화물 리스트

설명: 본 《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이하 《세칙》으로 약칭)의 종류(類)·장(章)·세칙번호(稅則號列)에 근거하여 편제 배열되었다.

“세칙번호” 가운데 구체적으로 네 자리의 숫자로 세목 번호가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칙》중의 일부 장 전체를 포함하여 네 자리 숫자로 세목 번호가 표시된 화물에 대하여 해당 장의 표제만을 열거한다. 특정한 네 자리 숫자의 세목 번호를 가리키는 어떠한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세목 번호의 앞에 “*” 표기를 덧붙인다.

“삭제(裁翦)”는 전체 衣片(또는 工料)에 대한 삭제를 가리킨다.

1)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令

2) 關於非優惠原產地規則中實質性改變標準的規定

3)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稅則

4)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

5) 適用製造或者加工工序及從價百分比標準的貨物清單

6) 동물의 소장을 말린 것, 소시지의 외피 또는 배드민턴 라켓의 망(net)이나 외과 봉합용 실로 사용됨.

7) 가죽을 무두질할 때 쓰이는 약품

8) 鋼紙: 진한 염화 아연액으로 처리된 종이. 절연 또는 열 파위의 차단에 사용됨.

9) 吸墨紙: 목지 또는 압지

10) 綿絲

세척번호	화물에 대한 설명	실질적 개정 표준
제1종(第一類) 살아있는 동물(活動物); 동물 제품		
제3장		
*03.03	냉동 생선알	
03.04	신선·냉장·냉동 생선포 및 기타 어육제품(형태불문)	
*03.06	각테일 새우·게살	내장 및 뼈와 가시 제거
*03.07	냉동 또는 건조된 오징어 및 문어·낙지	
제5장		
*05.04	동물의 내장(腸衣 ⁶⁾)	세척 후 염장 또는 건조
제2종 식물 제품		
제8장		
*08.01	캐슈너트(cashew nut)	껍데기 제거

- 11) 長絲: 가는 실. 홀 섬유
- 12) 分特: Denier, 생사나 나일론 등의 굵기를 재는 단위
- 13) 栽絨地毯:栽絨이란, 겉면에 털(실)이 돌게 짠 융단의 한 종류를 가리킨다.
- 14) kersey: 방모사로 짠 모직물의 일종: 원문에서는 簇絨으로 되어 있으나 외래어 표기상의 차이인 듯
- 15) flock
- 16) 수직카펫의 종류
- 17) felt
- 18) 털을 세우는 가공법
- 19) 紗羅: 향라를 짜는 실
- 20) 網眼薄紗
- 21) 수직 카펫의 종류
- 22) 透寫 tracing
- 23) polyamide
- 24) polyester
- 25) linoleum
- 26) overall: 일명 멜빵바지 또는 뽀빠이 바지
- 27) 슈미즈(chemise) 페티코트(petticoat)
- 28) 거들·코르셋 등
- 29) 賤金屬: 가격이 비싸지 않은 금속
- 30) converter
- 31) 整流器
- 32) 반송파(搬送波): carrier wave,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비롯하여 무선통신에서 정보를 실어 보내는 사인(sine)파 또는 펄스(pulse)파
- 33) diode:이극관

제4종 식품; 음료·주류·식초; 담배 및 담배 대용제품		
제17장		
*17.01	굵은 설탕 및 백설탕	원당으로 제조
제18장		
18.04	코코아 유지·코코아 오일	코코아 열매로 제조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18.05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 분말	
18.06	초콜릿·기타 코코아 함유 식품	
제24장		
*24.02	시가·퀄런	담뱃잎으로 제조
*24.03	기타 담배 제품	
제6종 화학공업과 관련 공업제품		
제28장	무기화학제품: 귀금속·희토금속·방사성 원소·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유기 화합물 및 무기 화합물	화물에 부여된 고유 세척번호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또는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29장	유기화학제품	
제30장		
30.03	2종 또는 2종 이상의 성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지고 질병치료 또는 질병방지에 사용되는 약품(세척번호30.02·30.05·30.06 불포함), 용량을 배합 확정하지 않았거나 소매용 포장하지 않은 약품	화물에 부여된 고유 세척번호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또는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30.04	혼합 또는 비혼합 제품으로 구성되고 질병의 치료 또는 질병방지에 사용되는 약품(세척번호 30.02·30.05·30.06 불포함), 용량이 배합 확정되었거나(피부용 패치제품 포함) 소매용으로 포장된 제품	

제31장	비료	
제32장	유피제 ⁷⁾ 엑스(extract)·염료 엑스; 타닌(tannin) 및 그 유도체; 염료·안료 및 기타 착색제; 유성페인트 및 바니시; 퍼티(putty) 및 기타 유형의 접합제; 수성 잉크·유성 잉크	화물의 고유 세척 번호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또는 증가 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33장	에센스 오일·아로마 크림; 방향제품 및 클린징 제품	
제34장	비누·유기 표면활성제·세제·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 청결제·양초 및 유사제품·조소용 석고·“치과용 왁스” 및 치과용 숙성 석고(熟石膏) 제제	
제38장	기타 화학제품	
제7종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및 그 제품; 라텍스 및 그 제품		
제39장		
39.17	플라스틱 파이프 및 그 부속품(예: 접합부·플랜지·엘보(elbow)형 파이프)	39.01-39.14의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성형한 것
39.18	조각 또는 두루마리 형태의 바닥 시공용 제품, 접착 여부 불문; 주석 9에서 규정된 비닐 도배제품	
39.19	접착식 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 조각(箔)·벨트·편평한 강판 및 기타 편평한 형태의 재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	
39.20	기타 비포말형 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 조각·편평한 강판,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강화·압축·지탱되지 않았거나 유사한 다른 방법으로 합성되지 않은 제품	
39.21	기타 플라스틱판·조각·필름·얇은 조각·편평한 강판	
39.22	플라스틱 욕조·샤워부스용 바닥재·세면대·비데·변기·변기뚜껑·변기물통 및 기타 위생용구	

39.23	운송 또는 화물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제 병마개·뚜껑·기타 유사제품	39.01-39.14의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 성형한 것
39.24	플라스틱제 식기·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세면용품	
39.25	기타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과 세척번호 39.01-39.14에 열거된 기타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	
제40장		
40.07	가황고무선 및 가황고무줄	고무판·고무조각·고무벨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40.08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판·조각·벨트·자루 또는 型材 또는 이형자재(異型材)	
40.09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파이프, 부속품 포함여부 불문(예: 접합부·플랜지·엘보형 파이프)	
40.10	가황고무로 만든 전동벨트; 가황고무 타이어(實心 또는 半實心)·고무 胎面·고무 타이어 보조벨트(襯帶)	
40.11	고무튜브(공기충전식)	
40.12	재생 튜브 또는 중고 튜브; 가황고무 타이어·고무 胎面·고무타이어 보조벨트(襯帶)	
40.13	고무 튜브	
40.14	경화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위생 및 의료용품(젓꼭지 포함), 경질고무로 만든 부속품 포함 여부 불문	
40.15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의류제품 및 악세사리(장갑 포함)	
40.16	가황고무(경질고무 제외)로 만든 기타 제품	

40.17	<p>각종 형태의 경질고무(순수한 경질고무 등), 페비닐 포함; 경질고무 제품</p>	<p>고무판 · 고무조각 · 고무벨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거나 종가백분을 표준에 적합한 것</p>
<p>제8종 생고무 · 피혁 · 모피 및 그 제품; 마구 및 만구(鞍具); 여행용품 · 핸드캐리어 가방 및 유사제품; 동물 腸線(실크 蠶膠絲 제외)제품</p>		
41.04	<p>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소가죽(물소가죽 포함) · 말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剖層) 여부 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는 상태일 것</p>	<p>무두질 또는 반복무두질(複鞣)하여 정리하고 장식(整飾)한 것</p>
41.05	<p>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면양 또는 어린양의 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 여부 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는 상태일 것</p>	
41.06	<p>무두질되고 털을 제거한 기타 동물의 가죽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딱딱한 가죽, 분할 여부 불문, 그러나 더 이상 가공되지 않는 상태일 것</p>	
41.07	<p>무두질 또는 반초(半硝) 처리하여 가공한 소가죽(물소가죽 포함, 털은 제거)과 말가죽, 지화(紙化)처리한 양피 포함, 분할 여부 불문, 그러나 세척번호 41.14에 해당하는 피혁의 경우는 제외</p>	
41.12	<p>무두질 또는 반초 처리하여 가공한 면양 또는 어린 양의 피혁(양모는 제거), 분할 여부 불문, 그러나 세척번호 41.14에 해당하는 피혁의 경우는 제외</p>	
41.13	<p>무두질 또는 반초(半硝) 처리하여 가공한 기타 동물피혁(털 제거), 지화, 분할 여부 불문, 그러나 세척번호 41.14에 해당하는 피혁의 경우는 제외</p>	
제42장		

*42.02	피혁 또는 재생피혁·플라스틱 박막 필름·방직재료·강지(鋼紙) ⁸⁾ 또는 지판으로 만들어지거나 100% 또는 주요 부분이 강지 또는 지판으로 코팅된 의류용 상자·트렁크·소형상자·문서가방·서류가방·책가방·안경집·망원경 케이스·악기용 케이스·카메라 케이스·총기 보호용 주머니 및 유사제품; 지갑·지도함·담배 케이스·공구함·운동용 주머니·보석함·포크와 나이프 등의 식기 및 유사 제품	재단·봉제·성형
42.03	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든 의류제품 또는 착용 액세서리	재단·봉제
제43장		
43.02	봉제되지 않았거나 봉제되고 무두질된 모피	무두질
43.03	모피로 만든 의류·액세서리 제품 및 기타 제품	재단·봉제
*43.04	인조 모피 제품	재단·봉제
제10종 목재 펄프 및 기타 섬유질 상태의 셀룰로스 펄프·재생종이(폐지) 또는 판지; 종이·판지 및 그 제품		
제48장		
48.17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편지봉투·봉함엽서·엽서·통신카드;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상자·봉투·파일·내장용 각종 문구류	재단·제본 또는 인쇄
48.18	휴지 및 기타 유사제품, 가정용 또는 위생용 섬유소 펄프(絮紙) 및 섬유종이, 두루마리 너비가 3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이즈 또는 형태를 갖추도록 절단된 것; 종이펄프·종이·섬유소 펄프 또는 섬유종이로 만든 손수건·수건·테이블보·냅킨·기저귀·지혈대·침대시트 및 그와 유사한 가정용 또는 위생용이나 병원용품·의류제품·기타 액세서리	재단·소독

48.19	종이·판지·섬유소 펄프 또는 섬유종이로 만든 상자·케이스·갑·봉투 및 기타 포장용기;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파일박스·우편물 수납케이스 및 유사제품, 사무실이나 상점 등과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	재단·제본 또는 인쇄
48.20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등기부·장부·공책·구매장부·영수증·편지지·수첩·다이어리 및 유사제품, 연습장·먹지 ⁹⁾ ·파일·서류철·파일커버·상업용 서식용지·복사지가 가운데 끼여 있는 종이 및 기타 문구용품;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견본장(샘플 브로셔)·粘貼簿 및 책표지	재단·제본·인쇄
48.21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각종 상표, 인쇄 여부 불문	재단·제본·인쇄
48.22	펄프·종이 또는 판지(구멍을 뚫었거나 경화되었는지 여부 불문)로 만든 통모양의 실패·족자·紵子 및 유사제품	재단·제본·인쇄
48.23	일정한 크기 또는 형태로 재단된 기타 종이·판지·섬유소 펄프 및 섬유종이; 펄프·종이·판지·섬유소 펄프 및 섬유종이로 만들어진 기타 제품	재단·제본·인쇄
제11종 방직원료 및 방직제품		
제51장		
51.06	거칠게 가공된 양모 털실,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모직섬유 또는 털실로 방직 제조한 것
51.07	정교하게 가공된 양모 털실,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1.08	동물의 가는 털(거칠게 가공되거나 정교하게 가공된 것)로 만든 실, 소매 판매하지 않는 것	
51.09	양모 또는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실, 소매 판매용	

51.10	동물의 굵은 털 또는 말의 털로 만든 실 (말의 털을 굵고 성기계 꼬아 만든 색실 포함), 소매판매 여부 불문	모직섬유 또는 털실로 방직 제조한 것
51.11	거칠게 가공한 양모 또는 거칠게 가공한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기계 직조물	직조
51.12	정교하게 가공한 양모 또는 정교하게 가공한 동물의 가는 털로 만든 기계 직조물	직조
51.13	동물의 굵은 털 또는 말의 털로 만든 기계 직조물	직조
제52장		
52.04	면사로 만든 재봉용 실, 소매판매 여부 불문	2가닥 또는 2가닥 이상의 실로 꼬아 만든 것
52.05	면사 ¹⁰ (재봉용 실 제외),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상이고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섬유로 방직 제조한 것
52.06	면사(재봉용 실 제외),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하이고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2.07	면사(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용	
52.08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상이고 평방미터 당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것	직조 또는 나염
52.09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상이고 평방미터 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	
52.10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하이며 화학섬유와 혼방되고 평방미터 당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것	
52.11	면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면화 함량이 85% 이하이며 화학섬유와 혼방되고 평방미터 당 중량이 200그램 이상인 것	
52.12	기타 면방직물	

제53장		
53.06	아마실	섬유로 방직 가공
53.07	황마사 또는 세척번호 53.03 기타 방직용 인피(靱皮) 섬유사	섬유로 방직 가공
53.08	기타 식물성 방직 섬유사; 종이실(紙紗線)	섬유로 방직 가공
53.09	아마 직조물	직조
53.10	황마 또는 세척번호 53.03 기타 방직용 인피 섬유로 만든 방직물	직조
53.11	기타 식물성 방직 섬유로 만든 방직물; 종이실로 만든 방직물	직조
제54장		
54.01	화학섬유 장사(長絲 ¹¹)로 방직 가공한 재봉용 실, 소매판매 여부 불문	2가닥 또는 2가닥 이상의 장사를 꼬아서 만든 것
54.02	합성섬유 장사(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하지 않으며 굵기가 67데니어 ¹² 이하이고 1가닥으로 이루어진 합성 섬유 포함	방사(紡絲)
54.03	인조섬유 장사(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하지 않으며 굵기가 67데니어 이하이고 1가닥으로 이루어진 인조 섬유 포함	방사
54.04	단면의 직경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굵기가 67데니어 이상이며 1가닥으로 이루어진 합성 섬유; 표면 너비가 5밀리미터 이하인 합성 섬유 방직재료를 이용하여 길게 만든 제품과 그 유사품(예: 인조풀)	방사
54.05	단면의 직경이 1밀리미터 이하이고 굵기가 67데니어 이상이며 1가닥으로 이루어진 인조 섬유; 표면 너비가 5밀리미터 이하인 인조 섬유 방직재료를 이용하여 길게 만든 제품과 그 유사품(예: 인조풀)	방사

54.06	화학섬유 장사(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용	방사
54.07	합성섬유 장사로 방직한 직물, 세척번호 54.04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방직물 포함	직조
54.08	인조섬유 장사로 방직한 직물, 세척번호 54.05에 열거된 재료로 만든 방직물 포함	직조
제55장		
55.08	섬유가 짧은 화학섬유로 만든 재봉용 실, 소매판매 여부 불문	2가닥 또는 2가닥 이상의 실로 꼬아 만든 것
55.09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실(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섬유 또는 화학털실로 방직 가공한 것
55.10	섬유가 짧은 인조섬유로 만든 실(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하지 않는 것	
55.11	섬유가 짧은 화학섬유로 만든 실(재봉용 실 제외), 소매판매용	
55.12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이상인 것	직조
55.13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미만이고 면과 혼방된 것, 평방미터 당 중량이 170그램 미만인 것	직조
55.14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방직물, 중량을 기준으로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의 함량이 85% 미만이고 면과 혼방된 것, 평방미터 당 중량이 170그램 이상인 것	직조
55.15	섬유가 짧은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방직물	직조
55.16	섬유가 짧은 인조섬유로 만든 방직물	직조
제56장		
56.03	방직되지 않은 것, 침지(浸漬)·도포(塗布)·뒤집기(包覆)·층압(層壓) 여부 불문	成網至成品

*56.07	마 또는 합성섬유로 방직 가공한 실· 끈·줄·로프	2가닥 또는 2가닥 이상을 꼬거나 편직한 것
56.08	실이나 끈 또는 줄을 엮어 만든 그물재 료; 방직재료로 만들어진 어업용 그물 및 기타 그물	편직 또는 직조
제57장		
57.01	용단 ¹³⁾ 및 방직재료로 만든 기타 러그제 품, 완제품 여부 불문	섬유 또는 실·끈 등으로 직조한 것
57.02	기계로 직조한 카펫 및 방직재료로 만든 기타 러그제품, 커지 ¹⁴⁾ 또는 플록 ¹⁵⁾ 가공 하지 않은 것, 완제품 여부 불문, “開來 姆”·“蘇麥克”·“佉拉馬尼 ¹⁶⁾ ” 및 그와 유 사한 수직 카펫	
57.03	커지 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커지 가공한 러그제품, 완제품 여부 불문	
57.04	펠트 ¹⁷⁾ 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펠 트 가공한 러그제품, 커지 또는 플록 가공 하지 않은 것, 완제품 여부 불문	
57.05	기타 카펫 및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한 기타 러그제품, 완제품 여부 불문	
제58장		
58.01	기용(起絨 ¹⁸⁾) 가공한 방직물과 승용(繩絨) 가공한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8.02 또 는 58.06에 해당하는 방직물은 제외	직조·뜨개 또는 접합이나 퍼지 가공한 것
58.02	타월 방직물 및 그와 유사한 방직물, 그 러나 세척번호 58.06에 해당하는 폭이 좁 은(狹幅) 직물은 제외; 퍼지 가공한 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7.03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	

58.03	사라 ¹⁹⁾ , 그러나 세척번호 58.06에 해당하는 폭이 좁은 직물은 제외	직조·뜨개 또는 접합이나 퍼지 가공한 것
58.04	그물눈 박사 ²⁰⁾ 및 기타 그물눈 직물, 그러나 기계직물·뜨개직물·코바늘 뜨개직물; 두루마리·줄·조각 도안의 레이스, 그러나 세척번호 60.02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	
58.05	“哥白林”·“弗朗德”·“奧步生”·“波微 ²¹⁾ ” 및 유사한 양식으로 수직 생산한 장식용 카펫, 그리고 손자수로 꽃무늬를 새겨 넣은 장식용 카펫(예: 小針脚이나 십자수), 완제품 여부 불문	
58.06	폭이 좁은 기계 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8.07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접착제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날줄은 있으나 씨줄은 없는 폭이 좁은 직물(옷감용 밴드)	
58.07	자수 아닌 방직재료로 만든 상표·휘장·그와 유사한 제품, 필(匹)·데이프 또는 일정한 형태나 사이즈로 재단된 제품	
58.08	필 형태로 가공된 편대(編帶); 자수 아닌 방직재료로 만들고 필 형태로 가공된 장식용 벨트, 그러나 대바늘 뜨개 또는 코바늘 뜨개 직물은 제외; 장식용 술이나 장식 방을 및 유사 제품	
58.09	기타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금속 기계직물 및 세척번호 56.05에 열거되고 금속사를 포함한 기계직물, 의류나 액세서리 또는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58.10	필 · 테이프 · 작은 조각 도안의 자수제품	자수,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58.11	한 겹 또는 여러 겹의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기본 바탕이 되는 재료와 함께 누빔 가공하여 만든 침구류 방직제품	재단 · 봉제 · 누빔
제59장		
59.01	풀이나 전분을 도포하여 가공한 방직물, 서적의 표지로 사용되거나 그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트레이싱 ²²⁾ 천; 완제품 유희용 천; 모자 속에 덧대는 뿔뿔한 천을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방직물	기계 방직 또는 편직물로 제조
59.02	나일론 또는 기타 폴리아미드 ²³⁾ , 폴리에스테르 ²⁴⁾ 또는 접착 섬유 초강력사로 만든 커튼 천	
59.03	플라스틱의 침지 · 도포 · 커버링 또는 층압에 사용되는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9.02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59.04	리놀륨 ²⁵⁾ (아마오일 카펫), 재단성형 여부 불문; 직물을 바닥에 깔고 도포 또는 커버링하여 만든 바닥갈개 제품, 재단성형 여부 불문	
59.05	도배용 직물	
59.06	고무를 사용하여 처리한 방직물, 그러나 세척번호 59.02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59.07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침지 · 도포 · 커버링 처리한 방직물; 무대 · 촬영용 배경 천 ·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미술용 화포	

59.09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수도 파이프(軟管) 및 유사한 파이프 제품, 기타 보충 재료를 보조재나 보호재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불문	직조 또는 자수
59.10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전동 벨트 또는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 및 벨트재료,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침지·도포·커버링 또는 층압하였거나 금속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재질이 강화되었는지 여부는 불문	직조 또는 자수
59.11	제59장 주석7에 규정되고 전문기술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제품 및 그 제품	
제60장	편직물 및 코바늘 뜨개직물	직조 또는 편직
제61장		
61.01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남성용 코트·반코트·망토·짧은 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 상의 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 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1.03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재단·봉제 완성 또는 편직이나 직조
61.02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여성용 코트·반코트·망토·짧은 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 상의 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 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1.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1.03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남성용 양복 정장·평상복 상하의·재킷·바지·작업용 오버올 ²⁶⁾ ·승마복 바지·반바지(수영복 제외)	

61.04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여성용 정장·평상복 상하의·재킷·원피스·치마·치마바지·바지·작업용 오버올·승마복 바지·반바지(수영복 제외)	재단·봉제 완성 또는 편직이나 직조
61.15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팬티스타킹·타이트한 팬티스타킹·긴 양말·짧은 양말 및 기타 양말류, 정맥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양말과 無外鞣鞋底 등의 신발 종류	재단·봉제 또는 편직이나 직조
61.16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손가락 장갑·병어리 장갑·손가락 노출형 장갑	재단·봉제 또는 편직이나 직조
61.17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로 만들어진 기타 액세서리 완제품; 의류제품이나 착용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 부속품	
제62장		
62.01	남성용 코트·반코트·망토·짧은 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 상의 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 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2.03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재단·봉제 완제품
62.02	여성용 코트·반코트·망토·짧은 망토·모자가 달린 방한용 상의(스키복 상의 포함)·바람막이·바람막이 상의 및 유사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62.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2.03	남성용 양복 정장·평상복 상하의·재킷·바지·작업용 오버올·승마복 바지·반바지(수영복 제외)	
62.04	여성용 정장·평상복 상하의·재킷·원피스·치마·치마바지·바지·작업용 오버올·승마복 바지·반바지(수영복 제외)	
62.05	남성용 셔츠	
62.06	여성용 셔츠	

62.07	남성용 조끼 및 기타 내의·팬티·삼각팬티·과자마·잠옷바지·목욕가운·가운 및 유사 제품	재단·봉제 완제품
62.08	여성용 조끼 및 기타 내의·긴 속치마 ²⁷⁾ ·속치마·삼각팬티·짧은 속바지·잠옷·잠옷바지·목욕가운·가운 및 유사 제품	재단·봉제 완제품
62.09	신생아 의류 및 의류용 액세서리	
62.10	세척번호 56.02·56.03·59.03·59.06 또는 59.07에 해당하는 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의류	
62.11	운동복·스키복·수영복; 기타 의류	
62.12	브래지어·웨이스트 니퍼·체형보정용 속옷 ²⁸⁾ ·바지걸이·양말걸이·양말대님 및 유사제품과 그 부속품, 편직방법 불문	
62.13	수건	재단·봉제,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62.14	솔·스카프·목도리·면사포·베일 및 그와 유사한 제품	
62.15	넥타이·나비넥타이	
62.16	손가락장갑·병어리장갑·손가락이 노출되는 장갑	재단·봉제
62.17	편직 또는 코바늘 뜨개가 아닌 방법으로 만들어진 착용 액세서리와 그 부속품	재단·봉제,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63장		
63.01	담요 및 여행용 담요	직조

63.02	침구류·식탁보·세면용·주방용 직물제품	재단·봉제 또는 편직이나 제직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63.03	커튼(취장 포함) 및 장막; 발 또는 침대커튼	재단·봉제 또는 편직이나 제직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63.04	기타 장식용 직물제품, 그러나 세척번호 94.04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63.05	화물포장용 봉투	편직 또는 직조 재단·봉합
*63.06	천막 및 햇볕가리개(차양); 텐트; 돛; 공기주입식 매트리스	재단·봉제 또는 접합·조립
63.08	기계 직물과 실로 구성된 소매판매 포장 패키지 제품, 부속품 구성여부 불문, 소형 카펫·장식용 카펫·자수로 장식된 테이블보·식탁보	재단·봉제 또는 직조·제직
제12종 신발·모자·우산·지팡이·채찍 및 그 부속품; 가공된 깃털 및 그 제품; 조화; 모발제품		
제64장		
64.01	밑바닥(外底)과 신발 등(鞋面)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방수신발, 신등이 박음질·리베팅·못질·나사·막음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신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신발 등 또는 바닥, 합성
64.02	밑바닥과 신발 등이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타 신발	
64.03	밑바닥은 고무·플라스틱·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들어지고 신발 등은 피혁으로 만들어진 신발	
64.04	밑바닥은 고무·플라스틱·피혁 또는 재생피혁으로 만들어지고 신발 등은 방직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신발	
64.05	기타 신발제품	

제65장		
65.03	세척번호 65.01에 해당하는 모자(帽身)·모자 주머니(帽兜)·둥근 모자조각(圓帽片)을 사용하여 만든 펠트 모자 종류, 안감과 장식물의 유무는 불문	열 압축성형
65.04	편직모자 또는 온갖 재료의 리본을 사용하여 만든 모자 종류·안감과 장식물 유무는 불문	재단, 봉제 또는 제직
*65.05	편직이나 코바늘 뜨개 또는 레이스나 기타 세밀하게 가공된 방직물을 사용하여 만든 모자 제품	편직 또는 봉제
*65.06	안전모·고무 또는 플라스틱제 모자	재단·성형
제66장		
66.01	우산·양산(휴대용 우산·파라솔 및 그와 유사한 제품 포함)	천을 재단하여 조립
제67장		
67.02	조화·인조 잎사귀·인조 과일 및 그 부속품; 조화·인조 잎사귀나 과일을 사용하여 만든 물품	성형·조합
*67.04	가발	직조·봉제 또는 접합
제13종 유리 및 유리제품		
제70장		
*70.09	테두리가 있는 유리거울, 후시경 포함	거울조각을 재단하여 테두리를 만들고 조립
*70.18	유리구슬·모조진주·모조보석·모조보석 반제품	절개·연마 또는 상감 처리
제14종 천연 또는 양식진주·보석이나 보석 반제품·귀금속·도금한 귀금속 및 그 제품; 모조 액세서리; 동전		
제71장		
*71.13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만든 액세서리	모형제작 또는 倒模, 상감 또는 성형, 광택, 전기도금

*71.16	진주 및 보석제품	천공 또는 분할 연마 또는 상감이나 구멍을 뚫어 실에 꿰는 것
71.17	모조 액세서리	倒模 또는 분할 접착이나 도금 광택
제15종 일반 금속²⁹⁾ 및 금속제품		
제73장		
*73.23	강철제 탁자·취사도구 및 기타 가정용제 품과 그 부속품	절단·성형 표면처리
제82장	금속공구·기구·利口器·숟가락·포크 및 그 부속품	절단 또는 주조 기계가공 표면처리
제83장	일반금속	절단 또는 성형 표면처리
제16종 기계전자류		
제84장		
*84.14	선풍기	전체 조립 공정을 거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4.15	에어컨, 팬·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가 부 착된 것, 단독 습도 조절 기능이 없는 에 어컨 포함	몸체(殼體)제조, 조립하여 완성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4.18	냉동고·냉장고 및 기타 냉동이나 냉장설 비	몸체 제조, 조립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4.23	저울(인체용 및 기타 저울)	
84.50	가정용 또는 세탁소용 세탁기,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다용도 세탁기 포함	
*84.52	산업용 재봉기계(가정용 재봉틀 제외)	
*84.67	전기 기계가 장착된 전동공구	전체 조립 공정을 거치고 증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4.70	컴퓨터	용접하여 조립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85장		
*85.01	출력 37.5와트 이하의 전동기계	실을 감아(繞線) 조립하고 종가백분율표준에 적합한 것
85.04	변압기·정지식 변환기 ³⁰⁾ (예:정류기 ³¹⁾) 및 전자감응센서	종가백분율표준에 적합한 것
*85.09	전자기계가 장착된 가정용 전동기계(진공 청소기·왁스칠 기계·믹서·녹즙기 등)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10	전기 면도기·전기 이발기·	표준에 적합한 것
*85.12	차량용 조명 및 신호 장치	
85.13	에너지를 자체 공급하는(예를 들어 건전 지·충전지·영구 자성 발전기를 사용하 는) 휴대용 전등, 그러나 세칙번호 85.12에 해당하는 조명장치는 제외	몸체제조·조립,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16	전기 온수기·전열 미용기구(헤어 드라이 어·헤어 롤러 등) 및 핸드 드라이어; 전기 다리미; 기타 가정용 전열기구(토스터·커피 피 메이커 등)	
85.17	유선전화·전보 설비, 무선전화기·유선 반송파 ³²⁾ 통신설비·유선 디지털 통신설비 포함; 화상전화	부품삽입·용접· 조립,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18	마이크로폰 및 그 받침대; 스피커, 공명상 자 장착 여부 불문; 이어폰·헤드폰, 마이 크로폰 장착 여부 불문, 마이크로폰과 1개 또는 여러 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시스템; 채널 확장기; 우퍼 시스템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19	노래방 기계·박스식 테이프 플레이어· 기타 음향설비	몸체제조·재단· 繞帶·조립,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0	테이프 레코더 및 기타 음향 녹음 설비, 음향 출력장치 장착 여부 불문	부품삽입·용접· 조립,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1	비디오 레코더 및 플레이어	표준에 적합한 것
*85.23	녹음되지 않은 공테이프(오디오·비디오)	몸체제조·재단· 테이프를 감아서 조립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4	녹음된 테이프(오디오·비디오)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5	무선 전화기·무전기	부품삽입·용접· 조립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7	라디오·라디오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 겸 용·차량용 수신기·鍾控 라디오	부품삽입·용접· 조립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28	TV	부품삽입·용접· 조립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34	인쇄회로	제판(製版)·부식· 천공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5.41	다이오드 ³³⁾ ·크리스털관; 감광 반도체 부 품; 발광 다이오드	용접·밀폐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17종 차량		
제87장		
87.12	자전거 및 기타 모터를 장착하지 않은 자 전차(운송용 삼륜 자전거 포함)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87.14	안장	재단 또는 모형압축, 조립

제18종 광학·카메라·계량·의료기기 및 설비; 시계; 악기		
제90장		
90.04	시력교정용·시력보호용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안경·고글 및 유사 제품	렌즈와 안경테 제작 및 조립, 증가백분을 표준에 적합한 것
90.06	카메라(영화촬영용 카메라 제외); 카메라 플래시 장치 및 램프, 그러나 세척번호 85.39에 해당하는 방전 램프는 제외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증가백분을 표준에 적합한 것
90.09	광학 시스템을 장착하였거나 또는 접촉식 감광 스캔 설비 및 감열식 스캔 설비를 갖춘 것	
*90.19	안마기	
*90.28	공업용 전기 계량기	
*90.30	만능시계	
제91장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기타 시계종류, 초시계 포함, 시계 제작용 귀금속 또는 귀금속으로 제작된 된 것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증가백분을 표준에 적합한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기타 시계종류, 그러나 세척번호 91.0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92.03	내부부품을 조립하여 만든 시계, 그러나 세척번호 91.04에 해당하는 시계는 포함하지 않음	시계 몸체를 제작하여 조립
92.04	계기판 시계 및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는 시계	
92.05	기타 시계	
92.08	이미 완벽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내부 부품	전체 조립공정을 거치고 증가백분을 표준에 적합한 것
제92장		

92.07	전기를 통해 음향을 만들거나 확대하는 악기(예를 들어 전자 오르간·전자기타·전자 아코디언)	부품삽입·용접·조립, 종가백분율 표준에 적합한 것
제20종 기타 제품		
제94장		
*94.04	수면용 안대	
*94.05	세척번호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조명기구 및 조명장치, 탐조등·스폿 라이트 및 그 부속품	
제95장		
95.02	인형	
95.03	기타 완구; 축소(비율에 따라) 모형 및 유사한 오락용 모형, 동작완구 여부 불문, 각종 지능개발용 완구	
*95.04	실내용 게임용품	
*95.05	크리스마스 용품	
*95.06	실외운동 및 게임용품	
*95.07	낚시용품	
제96장		
*96.01	동물성 조각재료 제품	
*96.02	식물성 또는 광물성 조각 재료 제품	
96.05	개인용 화장용품·재봉·구두나 의류의 청결에 사용하는 여행용 패키지 용품	
*96.06	단추	
*96.07	지퍼	
*96.13	퀵런용 라이터 및 기타 라이터, 기계식이거나 전기식인지 여부는 불문	
*96.17	외부 꺾테기가 있는 진공 병 및 기타 진공 용기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 대우

○ 관세율 현황

- 한국과 중국은 방콕협정 체결국으로써 중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은 방콕협정 체결국이 아니므로 중국은 북한산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부과함

○ 대북한 쿼터 적용 현황 및 경제제재 조치 : 해당 사항 없음

Ⅲ. 대만

1. 대만의 원산지 기준

가. 근거법규 및 체계도

○ 근거법규

- 관세법 제 24절 제 2 항 규정
- 본 법규는 특혜 및 비특혜의 원산지 기준에 관한 내용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

- 「일반」, 「개발도상국」, 「FTA 혹은 지역간 무역협정 체결국가」 등 총 3개로 나뉘어 규정되고 있음

[일반]

○ 기본 원칙

-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 이때 최종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함

[개발도상국]

○ 기본 원칙

- 최종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 단, 제 3 국을 거쳤을 경우 그 부가가격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기준 적용

- 부가가격을 계산법

$$\frac{\text{F.O.B-C.I.F}}{\text{F.O.B}} = \text{부가가격율}$$

○ 관세우대특혜

- 관세우대 신청화물은 반드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화민국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단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일체의 가공 및 재포장은 할 수 없음
- 동 해당자는 반드시 최종 출국국가 정부기관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인증이 필요함

[FTA 및 지역협정국가]

○ 기본 원칙

- 양국의 협정서 내용에 따름

다.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경제부 국가무역국-무역상관법령(수입상관규정)

<http://cweb.trade.gov.tw/kmDoit.asp?CAT328&CtNode=600>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한국: WTO회원국으로서 양허세율 적용(Column1 적용)
- 북한에 대해 별도의 차별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Column3 세율적용)

○ 상세내역

항목	한국	북한
섬유류	0-10%	0-15%
신발	5.0-7.5%	10.0%
가방	6.8-10	15
완구	1.1-2.2	5-7.5
고무플라스틱	0-10	2.5-10
신변장신구	0	0
자동차부품	5- 11.1	12.5-20
컴퓨터부품	0	7.5-10
전기전자제품	0-12	7.5-15
의류	5.6-12	10-15

*자료원: 대만재정부 관세총국

나.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조치 : 없음

다. 대만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 없음

라.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대만 재정부 관세총국

<http://wwweng.dgoc.gov.tw>

IV.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원산지 기준

가. 원산지규정 체계도(법령 체계)

-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사항은 Regulation of the Imports and Exports Regulations 1995에 규정되어 있음.

나. 원산지규정의 내용

- 수출입시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
 - 수입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 없으며 특혜 원산지규정만 적용됨. 싱가포르가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케이스별로 특혜 원산지규정이 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며 4가지 품목군(주류, 유류, 담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수입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원산지규정도 이들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필요한 경우 Certificate of Origin을 발급하고 있음.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음
 - (a) be wholly obtained in Singapore, ie, wholly grown in Singapore or produced in Singapore without any imported materials
 - (b) possess a local content of at least 25 percent of the ex-factory price of the product if it is manufactured with imported materials. products whici undergo minimal processing are not conferred originating status.

○ 원산지 증명의 종류

- 크게 일반 원산지 증명(Ordinary CO)과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증명으로 구분되며, 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외에 FTA에 따른 규정들이 있음.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GSP)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Commonwealth Preference Certificate(CPC)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GSTP)

다. 웹사이트 주소

- 관세청 : www.customs.gov.sg
- 전자통관시스템 : www.tradenet.gov.sg
- APEC 사이트 : www.apecsec.org.sg
- ASEAN 사이트 : www.aseansec.org
- 싱가포르 법령검색 사이트 : statutes.agc.gov.sg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한국산과 북한산에 대한 관세율 차별대우는 없음

나.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싱가포르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싱가포르가 최근 10년간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2003년 8월 일부 무기 제조 관련 제품의 대북한 및 대이란 수출에 관한 조치임.

V. 인도

1. 인도의 원산지 기준

가. 인도의 원산지규정 체계

- 인도는 별도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출국의 관련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수출국 해당기관이 발급한 원산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 특별 원산지 규정은 개별 무역협정에 따라 협정마다 상이
 - 여타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특혜무역관계를 규정한 무역협정의 부속서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혜무역협정의 종류 및 해당 원산지 규정 : 아래 참조)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 (특혜무역협정)

1)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 내용 : 77그룹 국가내 48개국에 대해 상호 10-50% 관세 특혜를 제공(1989. 4. 19일 발효)
- 50% 부가가치 기준 적용
 -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회원국간 누적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물의 합산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 수단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위 항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favor를 부여
- 한국 및 북한 공히 회원국

2) SAARC 특혜무역협정

(SAPTA : South Asi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 내용 : 남아시아 6개국(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간 품목별 일정한 관세 특혜 제공. 1995.12.7일 발효
- 40% 부가가치 기준 적용
 -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회원국간 누적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물의 합산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네팔)에 대해서는 위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favor를 부여

3)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ndia-Srilanka Free Trade Agreement)

- 내용 : 인도-스리랑카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민간품목을 제외한 1,000여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 제공 (1998.12.28일 협정 체결)
- 35% 부가가치 기준과 HS headings(첫 4단위) 변경기준 동시 적용
 - 다만 양국간 원산지의 누적을 인정하되, 이 경우 25% 이상의 부가가치가 수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

4) 방콕 협정

- 내용 : 방콕협정 회원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아)간 56개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특혜 제공 (1975. 7. 31일 협정 체결)
- 50% 부가가치 기준 적용
 - 해당 수출품의 생산비용 및 노동비용이 해당제품 공장도 가격(ex-works)의 50% 이상일 것

5) 인도-태국 자유무역협정(Indo-Thailand Free Trade Agreement)

○ 내용 : 인도-태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발효중인 것은 ‘조기실행 계획(EHP : Early Harvest Program)’의 82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호 무관세 제공(2004.9.1일 발효)

○ 40%의 부가가치 기준과 HS 헤딩(첫 4단위) 변경기준 동시 충족

※ 상기 원산지 기준은 인도 상공부 웹사이트(<http://commerce.nic.in>)에서 ‘Trade Agreements / Transit Arrangements’에서 확인가능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인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북한간 관세 차별이 없음

○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가 가입하고 있는 방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일부품목의 관세 특혜를 주고 있음

* GSTP 협정은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이며, 따라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나. 인도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및 특기사항 : 없음

VI.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원산지 기준

가. 원산지 규정 체계도

1)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에만 CEPT의 특혜관세를 적용하며, 기타

모든 국가에는 특혜없이 동일한 관세율 적용

2) 법률 체계

○ 무역법

- 원산지의 일반 개념을 규정 :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을 거친 국가

○ 관세법

- 수입품 신고시 제품의 품명, 수량, 중량, 가치, 원산지 등을 신고 토록 규정

○ AFTA의 원산지규정

- ASEAN 회원국간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

* 인도네시아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후 관세 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임.

나. 원산지 규정 내용

1) AFTA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for the CEPT scheme for AFTA)

○ 아세안 국가에서 100% 생산되거나 수확된 제품

○ 아세안 국가에서 100% 생산되거나 수확되지 않았을 경우

- 내용물의 40% 이상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최종생산 과정이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아세안 여러 국가에서 제조될 경우 부품 누적 가치의 40% 이상이 회원국에서 조달되어야 함

* 아세안 회원국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관련 웹사이트 : www.aseansec.org/cept%20afta%20roo.doc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가. 관세율 차이 : 한국산과 북한산의 관세율 차이는 없음
- 나. 북한에 대한 쿼타 적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타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VII. 태국

1. 태국의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규정 체계

- 자체적인 법령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WTO 협정에 부가되어 있는 원산지 규정을 따름.
- 한편, 동 규정에서는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비특혜(non-preferential) 규정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편견(Prejudice)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태국은 비특혜 규정의 적용은 없음.
- 원산지에 대한 특혜 규정의 경우는 태국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WTO의 다자간 협정을 고려하여 사용함.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인 GSTP, 아세안국가(동남아국가 연합)간 공동특혜관세인 CEPT가 있음.

○ 원산지 규정의 내용

-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 요약 : 개도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 생산 및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GSTP 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기준(규정 인용) : 협정국 이외의 수입품이 투입된 수출품의 경우 수출국에서 50%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고,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의 투입된 경우 수출국에서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함.

- 아세안국가(동남아국가 연합)간 공동특혜관세(CEPT)
 - 요약 : AFTA의 실행메카니즘으로서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되어 일부조항이 1995년 방콕정상회의에서 개정되었음. 아세안 회원국들은 CEPT협정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공동실효특혜관세 적용
 - 원산지 기준(규정 인용) : 수출품은 특혜를 받는 AFTA회원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회원국 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 최종제품의 FOB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범위여야 함.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dft.go.th, www.dfn.go.th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내용요약 : 태국은 GAAT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간 무역거래에 있어 상호 최혜국 관세 대우를 받고 있음. 여기서 관세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AFTA등으로 인한 특혜 여부에 한 함. 따라서, 한국/북한 간 일반적인 국가간 차별관세는 없음.

- 상세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customs.go.th, www.mof.go.th

VIII. 베트남

1. 베트남의 원산지규정

-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은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와 무역부(MOT)가 담당. 주무기관은 상공회의소이며 베트남에서 발급되는 대부분의 C/O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원산지증명서 관련 독립된 법령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못함.
- VCCI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C/O)는 Decision No. 218/PTM-PC(1998. 5. 28)과 이Decision의 2001년도, 2004년도 개정규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 이 규정에 의하면 VCCI에 의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총 6종류가 있음.
 - C/O Form A : GSP국가에 수출되는 베트남상품(현재 28개국이 GSP 혜택을 받고 있음)
 - 섬유의류제품 C/O : 베트남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수출하는 섬유의류제품
 - 핸드메이드 섬유제품 C/O : EU국가에 수출되는 핸드메이드 섬유제품
 - 커피 C/O
 - 기타제품 C/O : 기타 수입국가에서 특정요구사항이 있는 국가로의 베트남 제품 수출시
 - C/O Form B : 나머지 국가로의 베트남 제품 수출시
- C/O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및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Invoice, 수출허가서(필요시), 통관서류
 - 발급기간 : 1일, 최대 3일
 - 발급처 : VCCI 본부 또는 8개 지사
- 무역부(MOT)의 C/O 관련 규정
 - 중국과 아세안간 협정에 따라 중국에 수출하는 베트남 제품에 발급되

- 는 Form E (Decision No. 1727/2003/QD-BTM(2003. 12. 12))
- 라오스에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에 발급되는 Form S (Decision No. 0865/2004/QD-BTM, 2004. 6. 29))
- 아세안(ASEAN) 국가에 수출되는 베트남 제품에 발급되는 Form D (Decision No. 1420/2004/QD-BTM, 2004. 10. 4)

○ C/O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및 기간

-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Invoice, 수출허가서(필요시), 통관서류, B/L
- 발급기간 : 2-4시간, 최대 7일
- 발급처 : 무역부 산하 42개 사무소(이중 9개처는 무역부 산하이며 나머지는 산업공단, 수출공단위원회 관리를 받고 있음)

2. 북한산과 한국산의 차별대우 현황

- 한국과 북한은 모두 최혜국 특혜관세를 받는 89개국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산 제품과 북한산 제품은 베트남 수입시 차별대우 없음.
 - 한국은 1993. 5월 무역협정 체결
 - 북한은 1978. 1월 무역협정 체결
- 참고사항
 - 한국, 북한에 적용되는 베트남의 수입관세율은 차이가 없어 주요 제품군별 수입관세율 범위를 조사하였으며 HS코드별 상세품목은 세부 조사 필요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없음.
- 베트남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내역 : 없음.

IX. 필리핀

1. 필리핀의 원산지 규정 및 내용

- 필리핀 세관에 확인해 본 결과 필리핀은 특별한 원산지규정 법령이나 규정, 관련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원산지 인정 기준’으로 ‘Local Contents 가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40% 이상, 비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60% 이상’이라고 하며,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며, 관련 서류는 없다고 함.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없음

- 필리핀의 관세율은 2종류로, 하나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CEPT 관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MFN 관세율임.
-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MFN 세율을 적용함.
- 필리핀 관세율 책자에는 CEPT rate, MFN rate 이외에 WTO 비회원국가 등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전혀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없음
- 기타 필리핀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 북한과의 거래시 특이 사항
 -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시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관련 기관 : Philippine International Trading Corp. (PITC)
 - 법적 근거 : LOI (Letter of Intention) - 1976.8.9.
(중앙계획경제 국가들과의 거래 모니터링 의무화)

X.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의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규정 체계도

- 말레이시아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없음 (아세안 CEPT 및 중-아세안 Early Harvest Programme의 특혜관세 원산지 규정만 있음)
- 법률 체계

법 명 칭	내 용
교역표기법 Trade Descriptions Act 1972	원산지의 일반 원칙 (제품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처리나 과정을 거친 국가) 규정
관세법 Customs Act 1967	수입품 신고시 품명, 수량, 내용, 무게, 가치, 원산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
아세안원산지 관세령 Customs Duties (Goods of Asean Countries Origin)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Order 1995	아세안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 규정
아세안-중국 관세령 Customs Duties (Goods under the Early Harvest Programme)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 Order 2004	중-아세안 조기수확 프로그램의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 규정

□ 원산지 규정 내용

- 일반원칙 (Trade Description Act 1972)
 - 36조 원산지 규정
 - 1항 제품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처리나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친 국가로 간주

2항 (a) 처리나 과정이 제품의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 (b) 여러 부품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조립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 아세안 특혜관세 규정 (Customs Duties Order 1995)

- 아세안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수확된 제품
- 아세안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수확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물의 최소 40% 이상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조달되며, 마지막 제조과정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아세안 여러 국가에서 제조될 경우 부품 누적 가치의 40% 이상 아세안에서 조달되어야 함
- <http://www.miti.gov.my/asean-legal.html> 참조

○ 중-아세안 조기수확프로그램관세 규정 (Customs Duties Order 2004)

- 현지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 (동식물, 광물, 동식물 추출제품 등) (Rule 3)
- 현지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물의 40% 이상이 현지에서 조달되거나 외부조달 물품 FOB 가격이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종 제조과정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Rule 4, a항)
- 40%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frac{\text{非중-아세안 물품가치} + \text{원산지미결정 물품가치}}{\text{FOB 가격}} \times 100\% < 60\%$$
여야 함. 즉, $100\% - \text{비현지조달 물품가치} = 40\%$ 이상 (Rule 4, b항)
-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누적 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함 (Rule 5)
- 제품규격기준은 현지에서 충분한 변화(sufficient transformation)를 겪은 제품으로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Rule 6)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한국산과 북한산 차별대우 없음.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CEPT와 중국-아세안 Early Harvest Programme외에는 특혜관세 부여가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없음
-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없음

XI. 파키스탄

1. 파키스탄의 원산지 기준

- 원산지규정 체계도(법령 체계)

The Customs Act, 1969(국회제정) -->**Rules of Origin, 1973**

*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Rules of Origin, 1973" 에 명시

- 원산지 규정의 내용

- 내용 요약

원산지 인정기준은, 해당국에서 직수입을 조건으로,

- 1) 해당국에서 제품(상품) 전체가 생산 또는 제조된것
- 2) 해당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상품)으로서 해당국 생산품 이외의 제품(부품)사용에 의한 비용이 FOB가격의 50% 미만인 경우 등을 인정함

- 법령 인용

"Rules of Origin 1973" 2항

the following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country benefiting from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rovided they have been transported direct,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to Pakistan:-

- a)Products wholly produced and/or manufactured in that country;
- b)Goods produced and/or manufactured in that country in the manufacture of which produc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category (a) are used, provided that the cost of such products is not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F.O.B. Value.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없음.

XII. 미얀마

1. 미얀마의 원산지 기준

- 특별한 원산지 관련 규정이 없음
- 미얀마는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없으며,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없음

3. 특기사항

- 미얀마정부는 국교가 단절된 국가와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과 대만이 이에 해당함
 - 북한과는 1983년 아웅산묘지 폭탄테러 이후 국교가 단절된 바 있음
- 그러나, 북한, 대만과의 직교역이 금지되어 있을 뿐, 이들 국가제품이 제 3국을 통해 들어올 경우는 수입 가능함

XIII. 방글라데시

1. 방글라데시의 원산지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글라데시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령이 별도로 없음○ 매 5년마다 발표되는 Import Policy에 원산지에 대해 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방글라데시 제품임을 인증하는 원산지의 경우 각 협회 및 상공 회의소 등에서 발급(정부에서 위임) |
|---|

가. 원산지 규정의 내용

- 수입상품의 경우 포장지에 원산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해당국의 관

- 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단, 석탄, 면화, 수출용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의무 없음.
 - 다만 위생검역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표시의무 및 증빙필요
 - Chattak 시멘트 공장용 석회대리석(Limestone)의 경우 rope-way나 강에서 인도가 이루어질 경우 1회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가능하며, 이 때 L/C상에는 인도방법에 대해 적요가 되어 있어야 함.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 관세율 차이 :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없음
-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조치 내역 : 없음

■ 대 양 주

I. 호주

1. 호주의 원산지 기준

- 주재국의 원산지규정 체계도(법령 체계)
 - 모법 : Customs Act 1901(Part8, Division1A)
 - * 동 법은 1901년 제정 이후 2백여회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으며, 1998년의 개정이 가장 최근의 개정법률임.
 - 시행령 : The Customs Tariff Act 1995
 - 시행규칙 등 : 관세청공고(ACNs;Australian Customs Notices)
 - * 모법 및 시행령은 기준만을 제시하고 거의 모든 상세내용은 관세청 공고가 카버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의 내용

- 내용 요약 : 호주는 원산지규정을 특혜/비특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혜규정은 협약(Trade Initiative or Agreement)에 의거 수혜국에 적용하며, 기타는 비특혜규정을 적용하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음.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nsure that only goods that are 'the produce or manufacture' of a country or are an 'originating good' of a country that is a beneficiary of a particular trade initiative or agreement receives the reduced rates of duty in accordance with that initiative or agreement.

*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required for a number of reasons,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tariff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In 1995, it was agreed by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that there was a requirement for harmonize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at are predictable, objective and understandable. A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was established to undertake this work and operates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Customs Organis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WTO Committee on Rules of Origin. When completed, signatories to the WTO will need to comply with these rules.

○ 관련 웹사이트 : www.customs.gov.au

- 동 웹사이트 초기화면 좌측에서 import/export > rules of origin 을 차례로 클릭하면 됨.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내용 요약 : 호주는 북한과 대사급 수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일반상품에 대한 교역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며, 중진개도국(DCS)에 준하는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참고사항 : 한국산과 북한산에 대한 주요국 관세율 비교

국가 구분	해당나라수	해당 국가	비고
LDC(최빈국), DC(개도국)	56개	아프간, 이디오피아, 네팔 등	
DCS(중진개도국)	109개	가봉, 브라질, 카타르, 폴란드 등	DCT 4개국도 동카테고리에 포함됨.
DCT(선진개도국)	4개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General(기타 선진국)		기타 선진국	

- * 특정 품목 관세율이 "일반세율 10%, DCT 5%, DCS 4%, DC 0%" 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북한은 4%, 우리나라는 5%가 적용되며,
- * 따로 DCT 세율을 명기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도 DCS 세율이 적용됨.

- 상세내역 :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표(사례)

HS Code	품명	일반(G-rate)	한국(DCT)	북한(DCS)
4202.31.90	소형핸드백(지갑 등)	5%	5%	4%
8477.20.00	플라스틱 사출기계	5%	5%	4%
9501.00.00	장난감(스쿠터)	5%	5%	5%
6206.30.00	여성 브라우스(면)	17.5%	17.5%	17.5%

- * 대부분 한국과 북한에 적용되는 세율은 동일하나, 일부 품목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일체의 쿼터규제 없음

○ 호주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수출규제를 위한 Cocom 규제외의 다른 경제제재 조치는 실시치 않음.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관세율은 www.apectariff.drg에서 검색 가능

II.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원산지 기준

- 뉴질랜드는 공산품을 비롯,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경제제재 등 경제외적인 조치가 없어 원산지 규정은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입에만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북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원산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인 바 이는 섬유, 의류, 신발, 플라스틱, 완구, 전기전자 등 대부분 경공업 제품에 걸쳐 뉴질랜드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유지를 위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임

- 뉴질랜드의 관세는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되며 특혜관세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음
- 뉴질랜드의 일반관세
 - 뉴질랜드는 95%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율은 보통 7% 정도임
 - 그러나 자국 산업보호 및 고용유지를 위해 섬유, 신발,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9-24%대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특혜관세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등 : 호주,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세협정 체결국

- 인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혹은 1-2%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개도국 :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LDC(Lower Developed Countries)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통 일반 관세율보다 1.5% 정도 낮은 수준임
- 저개발국 : 방글라데시,알제리 등 저개발국에 대해 LLDC(Lowest Least Developed Countries)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관세율보다 2-3% 낮은 수준임
- 태평양 연안국 : 자국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사모아, 피지 등 태평양 연안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위와 같은 일반관세 및 특혜관세로 분류된 뉴질랜드의 관세부과 기준으로 볼 때 북한 제품은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개도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임

<품목별 관세율 검색>

북한에서 생산되어 수출이 가능한 섬유, 의류, 신발, 가방, 완구, 고무·플라스틱제품과 신변장신구,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전기전자제품 등 품목군과 품목별 관세율은 뉴질랜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t.nz)를 통해 상세하게 검색이 가능함

- 뉴질랜드는 무역 자유화를 적극 지향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쿼터를 적용하거나 경제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 뉴질랜드-북한은 지난 2001년 수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수교 이래 2005년 2월 현재까지 양국간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 대부분이 현지에서의 고용 및 산업 보호와 관련된 관세로 10-20%의 고율관세 부과대상이어서 수출가능성은 밝지 않은 편임

■ 중 남 미

I. 브라질

1. 브라질의 원산지 기준

가. 브라질의 원산지규정 체계도

○ 제도의 운용

- 축산물 등 경쟁력 있는 상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자국산품의 원산지 규정 운용.
- 수입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쿼터제, 불공정무역거래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수시적으로 적용.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요구)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원산지제도

- 역내시장통합으로 회원국의 제품이 혜택을 받기위해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
- 원칙: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60%이상의 부품을 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 역내무관세율 적용.
- 보칙: 여러 제품에 대한 세세규정 있음.
- 해당규정리스트: 현재 통합규정을 준비 중.
- 브라질은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써 대외공동관세(TEC)를 적용함.

나. 원산지 규정의 내용

○ 내용 요약

- 역내 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 첨부이 필요함.

○ 법령 인용

- 다음의 것들은 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 간주됨
 - . 공정이 당사국들의 원료를 사용하고 자국 영토에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제품
 - .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의 대표자위원회 결정 제78호의 부속서 I과 일치하는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수입관세분류표에 포함된 제품.
- 다음의 것들은 당사국 영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됨.
 - . 자국영토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추출,수확,사육된 수렵물과 어획물을 포함하여 광물,식물 또는 동물 제품들.
 - . 자국국기를 달거나 자국 영토에서 설립된 회사에 의해 임대된 배에 의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서 채집한 해산물.
 - . 자국 영토내에서 최종 상품화된 제품. 단, 단순 조립,포장,합성 등을 통해 생산된 것은 제외됨.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브라질은 남미관세동맹(Mercosur)국 중에 하나로서 대외공동관세(TEC)를 적용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이나 특혜무역협정국을 제외하고 동일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함.
- 브라질은 한국산과 북한산 구분 없이 관세율이 동일함.

남한과 북한에 대한 브라질 수입관세 비교

주요품목	HS Code	품명	관세율(%)
------	---------	----	--------

			남한	북한
섬유/의류	5205.11.10	면사	14	14
	5402.10.10	나일론 원사	16	16
	5407.41	나일론 직물	18	18
	5208.11	면직물	18	18
	6201.11	오버코트 (남성)	20	20
	6202.11	오버코트 (여성)		
	6203.11	양복, 바지 등 (남성)		
	6204.51	치마 및 바지 (여성)		
전자/전기	8525.20.20	핸드폰	20	20
	8525.40.90	디지털카메라/ 웹캠	20	20
	8525.20.90	무선 헤드셋	16	16
	8519.99.10	MP3 player	20	20
	8528.12.90	셋톱박스	20	20
자동차부품	8708.40.90	디스크	18	18
완구	9501.00	바퀴 달린 완구	20	20
	9502.10	인형		
신발	6401.10	안전용 신발	20	20
	6402.30	운동화		
플라스틱제품	3917.21	플라스틱 파이프	16	16
가방	4202.11	서류 및 여행가방	20	20
장신구	7117.19	액세서리	18	18

자료원 : TEC

나.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브라질은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일환으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치 않고 있음.

다. 기타 브라질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II. 콜롬비아

1. 콜롬비아 원산지 기준

가. 근거 법규 및 체계도

○ 콜롬비아는 원산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조항이 없으며, 특혜무역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공동체 회원국과 맺은 결의문에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의 경우 회원국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 또는 FOB 기준하여 내국자재를 최소 50% 사용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 CAN(안데안)의 경우는 회원국에서 제조된 물품, 최종 실질적 변형이 회원국에서 이루어진 것, 제품의 단순 조립이나 설치의 경우 원자재가 회원국일 것이며 CIF가격이 수출 FOB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함, 완제품의 경우 회원국의 일부 자재를 사용 제조하고 회원국 원산지가 아닌 자재의 CIF가격이 원자재의 사용이 수출FOB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ALADI 및 CAN 원산지 기준관련 웹사이트

○ ALADI 홈페이지 :

http://www.aladi.org/nsfaladi/_fea16errid5jn8pboeg_nsf/inicio2004i?OpenFrameSet&Frame=basefrm&Src=_v5tn76pj1dhgm8q9fvtj6ao9h6pin4sj9cgqmkrhoe1h6upb7bsn6ssr65tp6aprfe9kmeqbectm34c1g6gvkus35dp862pr54p0nat3f8pp62rb5cg

○ CAN 홈페이지 :

<http://www.comunidadandina.org/comercio/origen.htm>

2. 한국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없음

- 쿼터 적용 현황 : 없음
-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 관련 사이트 : 주재국 산자부 사이트로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으나 국제교역내역 및 관련 규정들을 게재하고 있음. (www.mincomercio.gov.co)

III. 페루

1. 주재국의 원산지 기준

- 주재국의 원산지규정 체계도 (법령 체계)
 - 페루는 원산지에 대한 법규조항은 없으며, 공동체 회원국 또는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결의문 등에 원산지 규정을 삽입하여 적용 중임
- 원산지 규정의 내용
 - 공동체 회원국들과 무역협정 체결국가별 원산지 규정 내용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원산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원칙, 증명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없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페루는 ALADI(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 CAN(안데안) 회원국들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멕시코처럼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대

해서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 페루와 특혜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없음
- 기타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 상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없음

IV. 칠레

1. 칠레의 원산지 기준

- 주재국의 원산지 규정 체계도
 - 칠레 세관법(Ordenanza de Aduanas) 'Annex K' 에 3장에 걸쳐 원산지 규정 설명
- 원산지 규정 주요내용
 - 제 1장
 - 원산지 규정 정의, 주요 원칙
 - 제 2장
 - 원산지의 증명, 증명 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제재조치
 - 제 3장
 - 원산지 증명의 통제
- 상기내용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없음
- 특정 원산지에 대한 특혜
 - 칠레는 2003년부터 수입품의 원산지, 품목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특정 원산지 수입품에 대한 차별대우는 없음.

- 단, 칠레는 현재 FTA체결 38개국, 경제보완협정 체결 9개국에 대해서는 개별협정 관세인하안에 따라 해당국 원산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양자협정 관세 부여하고 있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한국산 수입관세 : 지난 2004년 4월 1일 FTA발효 즉시 대칠레 수출액의 87%에 해당하는 9,700여 품목이 관세철폐되어 2004년말 현재 한국산의 수입관세는 1.3%로 낮아짐
- 북한산 수입관세 : 칠레와는 무역협정 미체결로 수입품에 대해 6% 관세 부과

○ 대북한 쿼터적용 및 경제제재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칠레의 대외무역협정 체결현황, 체결문, 각 협정별 원산지 규정 등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direcon.cl)에서 확인 가능

※ 칠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자료는 칠레상공회의소 (<http://www.sofofa.cl/comex/Origen/entidades.htm>)에서 확인가능

V. 멕시코

1. 멕시코의 원산지 기준

가. 근거법규 및 체계도

- 근거법 : las Normas para la determinacion del pais de origen de mercancas importadas y las disposiciones para su certificacion, en materia de cuotas compensatorias
(수입품 원산지 규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규정)

- 1994년 8월 30일에 최초 발표, 1996년 11월 11일, 1998년 10월 12일, 1999년 7월 30일, 2000년 6월 30일, 2001년 3월 23일, 6월 29일, 2002년 9월 6일, 2003년 5월 30일, 2004년 7월 14일에 개정

나. 특별 원산지 증명서 제도

○ 개 요

- 멕시코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및 섬유류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자 1993.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고,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실시한 것
- 1994. 9. 1부로 발표되고 1995.1.1부로 시행된 동 원산지규정은 종전 모든 신발, 섬유 수출국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등록토록 했던 것을 선진국들은 제외시키고 아시아 13개국과 WTO 비회원국으로 대상을 축소
- 중국이 2001년에 WTO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2002. 9. 6일에 중국, 대만 및 중국령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도 동 원산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

○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제출요령

- 한국 등 아시아 15개 국가
 - 일반품목 : 원산지설명서 제출, 첨부 4의 방법에 의거, 작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대한상회의 원산지증명서로 가능

- 첨부 2의 고시품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 정부에 통보 →
첨부 3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
- 15개국가 : 방글라데시, 키프로스, 한국,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중국, 대만」
- WTO 비회원국
 - 일반품목: 원산지설명서로 가함
 - 첨부 2 고시품목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멕시코정부에 통보 → 첨부 3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 민간검사(SGS)기관 검증 → 원산지증명서 발급 → 관할지역 멕시코 공관 확인
- 기타의 국가
 - 일반품목: 원산지설명서로 가함
 - 첨부2 고시품목: 첨부 3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 발급
- 첨부2의 고시품목(첨부 3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제출해야하는 품목)
 - 신발 및 직물, 의류

다. 관련 사이트 및 연락처

- 관련 사이트 : 멕시코 경제부
 - <http://www.economia.gob.mx/?P=781>
 - 담당부서 :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TEL :52-55-5229-6100(ext 34340, 34310)
이메일 : Ismaelr@economia.gob.mx, mreyna@economia.gob.mx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없음

- 멕시코는 북한에 대해 별도의 차별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NAFTA 등 FTA체결국에 대한 관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반덤핑관세 등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비FTA체결국 관세율은 동일함

○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현황 : 없음

- 멕시코에서 대북한 별도의 쿼터 적용사례는 없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커피, 옥수수, 콩 등 일부 수입 쿼터 품목의 경우에 북한도 포함됨(수입쿼터 내역 : 별첨 참조)

○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내역 : 없음

<별첨> 멕시코 수입쿼터 내역

No.	HS CODE	품목명	국가	단위	쿼터량
1	0105.99.99	Chick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2	0402.99.99	Milk preparation	All	Kilogram	44,200,000
3	0406.90.06	Egmont Cheese	All	Kilogram	1,600,000
4	0713.33.02, 0713.33.03 0713.33.99	Bean	All	Kilogram	67,196,239 (2004년)
5	0714.10.99	Cassava (manioc).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8	0901.11.01	Coffee, whether or not roasted or decaffeinated;	All	Kilogram	9,000,000
6	1001.10.01	Durum wheat.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7	1003.00.02;1003.00.99; 1107.10.01 1107.20.01	Grane, in the husk, other than that under subheading 1003.00.01.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9	1001.90.01;1001.90.99; 1213.00.01;1214.10.01; 1214.90.01;1214.90.99	Meal and pellets, except Alfalfa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0	1004.00.99	Oats.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1	1005.90.03 1005.90.04	Corn (maize).	All	Kilogram	3,359,790,900
12	1007.00.02	Durum wheat.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3	1105.20.01	Flour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4	1107.10.01	Malt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5	1201.00.03	Soybeans,	All	Ton	1,650,000
16	1213.00.01	Straw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7	1214.10.01	Alfalfa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18	1521.10.01	Pig fat (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All	Kilogram	250,000
19	1602.90.99	Meat	All	Kilogram	6,700,470
20	1703.10.00	Molasses, including bleached except that under subheading 1703.10.02.	All	Metric Ton	275,000
21	1703.90.99	Others molasses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22	1801.00.01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All	Kilogram	6,000,000
23	2101.11.01, 2101.11.02, 2101.11.99 2101.12.01	Instant coffee, not flavored.	All	Kilogram	372,400
24	2208.20.02	Brandy or Wainbrand which alcoholic strength is not less than 37.5 Gay - Lussac centesimal degrees with a total amount of volatile substances, other than ethyl and methylic alcohols, exceeding 200 g/hl	All	Litre	2,250,000

		of alcohol at 100% vol., and aged, at least, during a year in oak recipients or during six months as a minimum, in oak barrels with a capacity less than 1,000 l.			
25	2402.10.01	Cigar	All	Kilogram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26	8702.10.01, 8702.10.02, 8702.90.02, 8702.90.03, 8703.21.99, 8703.22.01, 8703.23.01, 8703.24.01, 8703.31.01, 8703.32.01, 8703.33.01, 8704.21.02, 8704.21.03, 8704.21.99, 8704.31.03 8704.31.99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ten or more persons, including the driver	All	Piece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2004년, 219,664개)

주) 쿼터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일부는 정확한 2005년 쿼터량이 발표되지 않았음

VI. 파나마

1. 파나마의 원산지 기준

○ 파나마의 원산지 규정 체계도

-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는 감찰법(Código Fiscal)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3권 제1편 1장~12장이 파나마의 수입관리제도 부분임
- 파나마와 FTA 혹은 특혜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한국,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해당하는 원산지 규정은 없음
- FTA를 맺은 엘살바도르 및 대만, 그리고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코스타리

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각 협정별 원산지 규정 항목 및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파나마 대외 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홈페이지 (http://www.vicomex.gob.pa/admin_tratados.html)에 수록되어 있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파나마는 FTA 혹은 특혜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에만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동일한 관세 부과
- 따라서 한국산과 북한산의 관세 차이는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파나마 정부는 행정령 47호로 수입쿼터, 수입사전허가, 수입수량제한 등 수량 규제를 폐지한 바 있으므로, 현재 북한산을 비롯한 전 세계 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쿼터는 없음

○ 기타 파나마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 CIS 지역

I. 러시아

1. 러시아의 원산지 규정

- 러시아의 원산지 규정은 Customs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May 28, 2003 (# 61-FZ)와 Customs Tariff Federal Law of May 21, 1993 (#5003-1) 인데, 2004년 1월 1일 이후 Customs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가 법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경우에 요구됨.
 - 수입물품이 특혜 세율(preferential tariff regime)을 요구할 경우(법규에 의하면 동 조건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세관 당국이 볼 때 믿음직하지 않을 경우
 - 특정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쿼터가 적용될 때

- 그러나 의무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음.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국의 상공회의소에 의해서 발행한 것을 근거로 함.

-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이 완성되는 국가이거나 충분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국가로 규정되며, 만일 2개국이나 그 이상의 국가가 제조절차에 참여한 경우 원산지는 세관 코드 규범에 맞을 만큼 충분한 절차가 완성된 마지막 가공국을 말함.

- 아래는 러시아의 원산지 규정(Customs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영문 번역본임.
(웹사이트는 www.tamognia.ru/code/sec1/subsec1/chap6/part1.html에서 볼 수 있으나, 러시아어로만 서비스됨.)

CUSTOMS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61-FZ OF MAY 28, 2003

(with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of December 23, 2003, June 29, August 20, 2004)

Chapter 6.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Paragraph 1.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Article 29.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ent Chapter

1.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shall b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hapter in all cases when the application of customs tariff regulation measures and bans and restrictions established in compli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depends o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2. The rules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preferential treatment tariffs or non-preferential trade policy measures.

Article 30.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1.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shall be deemed the country in which the goods were completely manufactured (Article 31) or subjected to sufficient processing (Article 32)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present Code or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present Code. In this cas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may be construed as a group of countries, or customs unions of countries or a region or part of a country if there is a need for discerning them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2. At the request of the declarant or other person concerned the customs bodies shall take a preliminary decision o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under Paragraph 3 of the present chapter.

Article 31. Goods Completely Manufactured in a Given Country

The goods completely manufactured in a given country are as follows:

- 1) mineral resources recovered from the sub-soil of the country, in its territorial sea or from its sea-bed;
- 2) vegetal-origin products grown or gathered in the country;
- 3) animals born and reared up in the country;
- 4) products obtained in the country from animals reared in it;
- 5) products obtained as the result of hunting or fishing in the country;
- 6) products of seal fishing and other sea products obtained by a vessel of the country;

- 7) products obtained on board a processing vessel of the country exclusively from the products specified in Subitem 6 of the present article;
- 8) products obtained from a sea-bed or sub-sea sub-soil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the country, provided the country has exclusive rights to development of the sea-bed or sub-sea subsoil;
- 9) waste and scrap (secondary raw materials) obtained as the result of production and other processing operations in the country, and also second-hand articles gathered in the country and fit only for being processed into raw material;
- 10) hi-tech products obtained from space facilities located in outer space if the country is the state of registration of the space facility;
- 11) goods manufactured in the country exclusively from the products specified in Subitems 1 - 10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2. Sufficient Processing Criteria

1. If two or more countries take part in the manufacture of goods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s deemed the country where the last processing or manufacturing operations of the goods were completed as meeting the sufficient processing criteria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rticle.
2. If for specific kinds of goods or for a certain country no specific mention is made in Item 4 of the present article as concerning the peculiarities of determin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ollowing general rule shall apply: the goods shall be deemed originating from a given country if as the result of completion of processing or manufacturing operations of the goods a change has occurred in the classification code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at the level of any of the first four digits.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established by Item 2 of the present article the following is deemed not to meet the sufficient processing criteria:

- 1) operations ensuring the safety of goods during the storage or transportation thereof;
 - 2) operations of preparing goods for sale and transportation (dividing up a lot, forming shipments, grading, re-packing);
 - 3) simple gathering operations and other operations the completion of which does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state of goods, according to the list set out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4) the blending of goods originating from different countries i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d product do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blended goods.
4. Also the following processing sufficiency criteria shall be used to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n the manner defi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 1) the completion of specific production or technological operations sufficient for making the country where these operations occurred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 2) a change in the value of the goods when the percentage share of value of used materials or value-added reaches a fixed share in the price of the end product (the rule of ad valorem share).
5. While establishing the procedure for application of the sufficient processing criteria for specific goods imported from countries to which the Russian Federation grants preferential tariffs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erms for application of the rules of direct purchase and direct shipping for the purposes of granting preferential tariffs.

Article 33. Peculiarities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1. Goods in dismantled or non-assembled form shipped in several lots due to the impossibility of their being shipped in a single lot by virtue of production or transport conditions, and also goods of which the lot is divided up in several lots as the result of an error shall be deemed a single unit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f the applicant so wishes.
2. Below are the terms for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

- 1) preliminary notification of the customs body of the goods in dismantled or non-assembled form shipped in several lots including an indication of the reasons for such delivery and the provision of specification for each of the lots complete with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s according to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the value and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ncorporated in each lot, or a documented acknowledgement of the fact that the goods were shipped in several lots by mistake;
 - 2) the shipment of all lots of goods from one country by one supplier;
 - 3) all lots of goods being declared to one customs body;
 - 4) the import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all lots of goods within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after the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by the customs body or the expiry of the term for filing a customs declaration for the first lot of goods. The said term shall be extended by the customs body by the time required for importation of all the lots of the goods at the substantiated request of the applicant.
3.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intended for use with machinery, equipment, devices or vehicles shall be deemed originating from the same country as the machinery, equipment, devices or vehicles on the condition that these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are imported and used together with said machinery, equipment, devices or vehicles in the sets and numbers usually supplied together with them.
 4. The packaging in which goods are brought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deemed originating from the same country as the goods proper, except for cases when packaging is subject to declaration separately from the goods. In such cases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packaging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from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Article 34. Confirm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1. The customs body shall be entitled to demand the provision of

documents confirming the origin of goods in the cases envisaged by Article 37 of the present Cod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confirmation of origins of the good from a specific country.

2.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deemed documents confirming the origin of goods from a specific country: a declaration of origin of the good (Article 35) or in the cases specifi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 (Article 36).

Article 35. The Declaration of Origin of Goods

1. Under the present Code the following may serve as a document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 a declaration on origin of the good drawn up in an arbitrary form on the condition that it contains information allowing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to be determined. Commercial or any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goods and containing a statement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made by the manufacturer, seller or exporter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of the goods may be used as such a declaration.
2. If in a declaration of origin of goods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s based on criteria differing from those used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s 31 and 32)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shall b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used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6.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1.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is a document that unequivocally testifies to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and that is issued by the competent bodies or organizations of a given country or of the country of export if in the country of export the certificate is issued on the basis of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f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s based on criteria differing from those applicable in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s 31 and 32)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the criteria applicable in the Russian Federation.

2. In the event of export of goods from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issued by the bodies or organizations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said certificate is required under contractual terms, the national rules of the country of import of goods or if the presence of said certificate i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bodies and organization that issue certificates of origin of goods shall preserve the copies thereof and the other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origin of the good is certified for at least a two-year term after the issuance thereof.

3.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shall be presented simultaneously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and other documents when customs formalities are performed in respect of good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f the certificate gets lost a duplicate copy thereof, formally attested, shall be acceptable.
4. If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is not appropriately drawn up (if it has unattested erasures, errors or corrections, the necessary signatures or seals are lacking, the details in the certificate do not allow their relation to the good declared,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or the criteria on the basis of which the conclusion o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 are equivocally stated in the certificate to be established, if the indication of such criteria i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f the certificate is found to contain signs of unreliable information the customs body shall be entitled to ask the country's competent bodies or organizations that issued the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 to provide additional documents or more precise information.
5. The customs body shall be entitled to ask the country's competent bodies or organizations that issued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to provide additional documents or more precise information also for

the purposes of conducting verification on a selective basis. The performance of such a verification shall not impede the clearance of good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thereof declared when customs formalities were performed.

Article 37. The Presentation of Documents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1. When goods are brought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 document shall be shown to confirm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f the Russian Federation grants preferential tariffs to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is case the document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shall be presented to the customs body simultaneously with the customs declaration.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tariffs may be conditioned by the need for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according to the specific form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ustoms bodies are entitled to demand the presentation of a document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n other cases only if they discover signs of unreliability of declared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that affects the rates of customs duty, taxes and/or bans and restric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Item 1 of the present article, there shall be no need to show a document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 1) if goods brought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re declared under the customs regime of international customs transit or the customs regime of temporary import with complete relief from customs duties and taxes, except for cases when the customs body discovers signs of the fact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is a country whose goods are prohibited for import into the Russian Federation or transit via its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 2) if the total customs value of goods carried across the customs border dispatched at one and the same time by one and the same method by one and the same consignor to one consignee is less than 20,000 roubles;
- 3) if goods are moved across the customs border by natural persons under Chapter 23 of the present Code;
- 4) in the other cases envisaged by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38. Additional Terms for Clearance of Goods when the Country of Origin Thereof Is Determined

1. If there are no documents to confirm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where the presentation of such documents is compulsory for the provision of preferential tariffs (Article 37), customs duties shall be payable on such goods at the rates applicable to goods originating from the countries with which trade and political relations envisage most-preferred-nation treatment, except for the case mentioned in Subitem 1 of Item 2 of the present article.
2. In other cases when documents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are lacking or when signs are discovered of the fact that documents presented have been drawn up inappropriately and/or that they contain unreliable information the following shall be done before the filing of documents confirming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or the provision of more precise information:
 - 1) customs duties shall be paid on the goods at the rates applicable to goods originating from the countries with which trade and political relations do not envisage most-preferred-nation treatment if the customs body discovered signs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s a country with which trading and political relations do not envisage most-preferred-nation treatment or a security shall be

- provided for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t said rates;
- 2) the goods are cleared on the condition that the applicant files documents to confirm the observance of restrictions established or provides a security for the payment of anti-dumping or compensation duty if the customs body has discovered signs of the fact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is a country from which import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state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ctivity or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 3) the goods shall not be cleared only in cases when the customs body has discovered signs of the fact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may be a country whose goods are prohibited for importation into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or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3. Preferential treatment or most-preferred-nation treatment shall be implemented (restored) in respect of the goods specified in Item 1 and Subitem 1 of Item 2 of the present Article on condition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iven goods is confirmed before the expiry of a one-year term after the acceptance of the customs declaration by the customs body. In this case the refund of customs duty or tax amounts shall be effected in compliance with Article 356 of the present Code.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과의 무역에 있어 어느 한 국가 일방에게 특혜조건을 주지 않고 있으며 공히 유사한 특혜 세율을 누리고 있음.
 - 러시아는 한국 및 북한에 GSP를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 북한산에 대해 특별한 수입제재 조치 등은 없으며,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을 이유로 관련 품목을 수입 금지 조치한 바 있음.

II. 우크라이나

1. 원산지 기준

○ 원산지규정 체계도(법령 체계)

- 우크라이나에는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부여하는 법률이 있으나(1997.4.3일자 법률 No. 170/97-BP) 이는 사문화되었음.
- 원산지에 따른 관세는 우대관세와 일반관세의 2가지로 구분되는데 우크라이나와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우대관세를, 기타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부여함.
 - . 우대관세율은 보통 일반관세율의 50%수준이며,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특혜관세협정의 체결 및 우대관세 부여에 관한 근거법은 관세율법(Law on Uniform Customs Tariff)임.

○ 원산지규정의 내용

- 우크라이나 관세율법(Law on Uniform Customs Tariff) 제 26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간의 협정이 관세율법이나 이 법의 하위법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간 협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와 특혜관세의 부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북한을 포함하여 77개국에 달함.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우크라이나와 특혜관세의 부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일목요연하게 발표하는 법령은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민간업체의 사이트

는 www.mdoffice.com.ua임(단, 유료이며 러시아어로만 서비스됨).

- 품목별 관세율을 알 수 있는 사이트는 <http://zakon.rada.gov.ua/cgi-bin/laws/>인데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로 서비스되고 있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한국과 북한은 모두 우크라이나와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한국 1995년, 북한 1992년) 한국산과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입관세율(우대관세율)이 적용되며, 차별이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현황 : 쿼터 적용품목이 없음.
- 기타 주재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제재조치가 전무함.

■ 중동 및 아프리카

I. U.A.E

1. UAE의 원산지 기준

- 외국산 제품의 수입경우
 - 특혜/비특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단, '이스라엘'이 원산지로 표시되어 있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세관통관이 되지 않음.
 - GCC (GULF COOPERATIVE COUNCIL) 회원국 6개국(UAE ,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GCC 국가간 예는 세관 통관이 가능함, 동 사항과 관련된 별도의 법안 공표는 없었으며 연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GCC 회동에서 결의한

THE UNIFIED CUSTOMS REGULATION (2003년 1월부터 발효)에 기재되어 있음.

- 원산지 증명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두바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음(<http://www.dcci.ae/contents.asp?page=certificateintro>)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가. 관세율 차이

- UAE는 국별 관세율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물품에 따라 모든 공산품은 상업송장에 표시되어있는 물류 총액의 CIF 기준가격 5%를 관세로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술과 담배류는 CIF 기준가격 100%를 관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 밖에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품목도 있음.
 - 면세 품목은 http://www.dxbcustoms.gov.ae/index_frame.asp에서 확인가능

나.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 사례

- UAE는 수입물품에 대한 쿼터 적용이 없음

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II. 요르단

1. 요르단의 원산지 기준

가. 요르단의 원산지규정 체계도

- 요르단은 원산지 관련 규정이 별도로 법률로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과 쌍무간 무역협정 체결시 협약에 의거 개별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관련, 원산지 관련 담당부서는 산자부임

나. 원산지 규정의 개요

- 상기와 같이 요르단과의 쌍무 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시 협약에 의거 원산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하기와 같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음

- 요르단-미국 자유무역협정

- . 2000.10월 협정을 체결하고 2001.12월에 발효되었으며 담배, 술 등 몇 개 취약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2010년도에 완전 무관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동 협정에 의하면 원산지 구성요건은 현지 원료 구성비가 전체의 35% 이상이면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요르단-EU 자유무역협정

- . 1997.11월 협정을 체결, 2002.5월에 발효되었는데 요르단 공산품의 대 EU 수출시 발효일로부터 관세철폐, EU역내 공산품의 대 요르단 수출시 발효일로부터 12년간에 걸쳐 단계적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동 협정에 의하면 현지 원료 구성비가 50% 이상이면 원산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산동물, 과일/야채 등 일부 품목 제외)

- 아랍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아랍리그)

- . 1997.2월에 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된 아랍자유무역협정(아랍리그)는 총 22개국중 17개국에 참여하였으며 참여국간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동 협정에 의하면 현지 구성비가 40% 이상이거나 또는 협정에 참여한 국가간 합작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은 현지 구성비가 20% 이상일 때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요르단-싱가폴 자유무역협정

- . 2004.5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원산지 규정과 관련, 현지 구성비가 35% 이상이면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직물/의류 등 일부 품목 제외)

다. 관련 웹사이트 : www.mit.gov.jo/index.htm

- 요르단 산자부내 원산지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Industrial Development Directorate"의 홈페이지이나 대부분이 아랍어 버전임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상기와 같이 쌍무간 무역협정에 의거 원산지 규정을 명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한국과 북한은 특별한 원산지 규정은 없으며 모두 일반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또한 북한에 대한 쿼터 적용이나 경제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Ⅲ. 이집트

1. 이집트의 원산지 규정 내역

가. 원산지 규정 체계도 (법령체계)

- 이집트 원산지 규정은 Law 118-1975 (수출입관련법)에 최초로 원산지 증명에 관한 조항이 언급된 뒤 수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뒤 현재는 재정부령 1859-2004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교역상품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별로 차별화 되어 있는 수입관세 부과 효율성을 위해 동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원산지 증명은 수입통관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통관서류로 수출국소재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쳐 통관하는 세관에 제출해야 함.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관자체가 불가능함

나. 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교역대상국에 따라 12개 카테고리로 분류, 각각 상이한 원산지 규정제도를 운영중임
- 카테고리 구분의 기준은 주재국(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여부, 상호조약 체결여부 및 국제 경제기구 가입여부, 특별품목 해당여부 등임

번호	카테고리 내역	해당국가	효력상의 차이
1	아랍리그 국가	아랍권 22개국	해당아랍국가의 로컬컨텐츠 비율이 일정 이상인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 면제(원산지 증명에 해외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확인 불필요)
2	FTA체결국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와의 FTA 협정에 의해 해당품목의 수입관세 일부 및 전부 면제(영사확인 불필요)
3	EU 연합	EU전 가맹국	이집트-EU Partnership-Agreement에 따라 향후 4년간 주요 교역 품에 대해 매년 25%씩 수입관세 인하, 2007년 이후 대부분의 교역 품 무관세를 적용 (영사확인 불필요)
4.	GSP 수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구독립국가연합,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독일, 영국,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등	상호주의 특혜부여

5	GSTP 해당국	아르헨티나 등 43개국 (한국과 북한이 이 카테고리 고리에 해당함)	일반적인 수입관세 부과
6	COMESA국가	COMESA가입국 19개국	COMESA협약에 따른 관세 면제
7	GATT내 최혜 국대우 가맹국	루마니아	관련규정에 따른 차별관세 부과
8	중국	중국	통관검역에 특별 절차 부과
9	섬유수입 원산 지 증명서	섬유류 품목수입시 사용	섬유류에 대한 특별통관 절 차 수행
10	기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국가	일반적인 수입관세 부과

* 기타 2개의 카테고리는 부속서류적인 분류임

다. 관련 웹사이트: WWW.GOEIC.GOV.EG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개요 : 한국과 북한산은 카테고리 5의 GSTP 해당국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전혀 차별성이 없음
- 관세율의 차이: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제도 실시: 북한에 대한 섬유쿼터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집트는 섬유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을 위해 수입상에 일정분량의 수입을 허용하는 개별 Buyer's 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특정국가에 대한 쿼터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이집트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 개요 : 이집트와 북한은 정치적 외교 군사분야에서 오랫동안 동맹적 위치에 있어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특이사항 : 오히려 이집트는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집트에 대해 의약품, 쌀, 석유, 비료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주재국은 과거 몇 차례 비교와 시멘트를 북한에 지원한 선례가 있음

IV. 이란

1. 이란의 원산지 규정 체계

- 이란의 경우 독립된 원산지 법규는 없음. 대신 이란의 관세법상의 제 4장(40조-54조)에 원산지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동 규정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은 세계관세기구(WCO)나 국제 관세 협력 평의회(CCC)의 규정을 원용 또는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 기타 세부 사항은 관세청 및 상무성에 내부업무지침 형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음

가. 조항별 내용

- 제 1부 원산지 판정기준
 - 제 40조 : 개념정의
 - 제 41조 : 완전생산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42조 : 2개국 이상 가공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43조 : 실질적 변경기준
 - 제 44조 : 부가가치 기준
 - 제 45조 : 미소가공
 - 제 46조 : 부품공구류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47조 : 포장재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48조 : 전기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 제 2부 원산지 증명서 및 관리기관
 - 제 50조 : 원산지 신고 및 원산지 신고확인
 - 제 51조 : 원산지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제 52조 : 원산지의 확인

- 제 53조 :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 제 54조 : 제3국 경유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나.. 세부 내용

- 완전생산품은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함(제 41조)
 - 해당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제품을 완전생산품이라 하며,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완전생산품의 경우 :
 - . 해당국에서 생산된 광물
 - . 해당국에서 수확된 야채, 채소류 등
 - . 해당국에서 양육된 가금류 및 그 가금류로부터 생산된 제품
 - . 해당국에서 채취된 수산물
 - . 해당국에서 선박위에서 가공생산된 수산물
 - . 해당국에서 생산과정중에 나온 스크랩 등 부산물
- 2개국 이상이 물품가공에 관여된 경우 그 물품의 원산지는 실질적 변경 여부에 근거하여 판정(제 42조)
- 실질적 변경 기준의 판정은 세관당국이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HSCODE 의 변경이나 혹은 국제관세협력평의회 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행함(제 43조)
- 이 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함에 있어 실질적 변경의 판정기준이 가치의 비율(%)에 의거할 경우 그 가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제 44조)
 - 수입물품의 경우 : 수입관세가 부과된 대상가격
 - 국내생산품의 경우 : 수출가격
- 아래 미소가공의 경우에는 실질적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봄(제45조)
 - 물품을 재 보관, 운반하기 위한 가공
 - 재포장에 관계된 가공
 - 단순 조립
 -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혼합

- 기계, 차량용 부품 공구류는 그 수량이 합리적인 경우 동 기계 차량의 원산지가 최종 원산지가 됨(제 46조)
- 포장재의 원산지는 포장되어진 포장되어진 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함, 단 그 물품이 별도로 포장되어져야할 경우 포장재의 원산지는 달리 판단됨(제 47조)
- 기계공구의 가공에 투입된 전기등은 원산지 기준 판정에서 제외됨(제 48조)
- 원산지 신고란 물품의 제조자, 수출자, 기타 자격있는 자가 인보이스나 다른 관련 서류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함을 말함. 확인된 원산지 신고란 세관에 의해서 확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말함(제 50조)
- 원산지 신고는 특혜관세가 해당되거나 혹은 관련 협정이 있는경우 혹은 보건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요구됨(제 51조)
- 세관이 접수한 원산지 증명서 상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세관은 동 원산지 증명서 발급지의 책임있는 관리에게 동 사실의 확인 또는 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 52조)
- 이란에서 이란의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유일한 발급기관)임(제 53조)
- 원산지가 있는 물품이 제 3국을 경유하여 수출된 경우 제 3국의 원산지 증명서가 처음국가의 원산지 신고와 내용이 일치되는 경우에만 수락됨(제 54조)

2. 한국과 북한간의 차별대우

- 한국과 북한간에는 관세 또는 원산지 기준상의 차별대우는 없음

V.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 원산지 기준

- 사우디는 현재까지 별도의 원산지 관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간의 통합경제협약에 명시된 원산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GCC 회원국간에는 무관세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경제협약 (Unified Economic Agreement)에 따라 다음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최종상품가치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회원국 사업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 (정보원 : www.gcc.sg.org)
- 참고로, 현재 사우디는 WTO 가입을 위해 무역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체계화된 규정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사우디는 한국산과 북한산에 대해 동일한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및 경제제재 조치 내역
 - 북한산에 대한 쿼터적용 및 경제제재 조치사례 없음.

VI.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의 원산지 기준

- 나이지리아의 원산지 관련사항은 the guidelines of the Central Bank of Nigeria (CBN) Monetary Policy Circular에 나타나 있음.

-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으며, 적송품의 경우 품명,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스펙, 제조일, 표준사항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Final invoice/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rigin (CCVO), Packing List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Final invoice /CCVO 에는 제품설명, 원산지 (C/O)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에는 원산지 관련 특혜/비특혜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수입 물품의 일반적 확인 차원에서 원산지 기록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웹사이트 : www.nigerianembassy.nl/Imports.htm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 나이지리아에는 한국산과 북한산 간 관세율 차이가 없음

VII. 남아프리카공화국

1. 주재국의 원산지 기준

□ 주재국의 원산지규정 체계

- 남아공의 원산지규정은 SOUTH AFRICA REVENUE SERVICE에서 규정한 CUSTOMS AND EXCISE ACT 제 46조에 규정되어 있음
- 남아공의 원산지규정은 WTO의 통합규정에 대부분 따르고 있어 특별한 남아공만의 원산지규정 특징은 없음
- 다만 특혜규정의 경우 남아공과 자유무역협정 등 특정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의 내용

○ 내용 요약

- 비특혜 원산지 규정

- WTO 통일 원산지 규정에 준거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 생산기준, 공산품의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생산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나는 경우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정함
- 실질적 변형 판정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 기준 또는 특정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지만 때론 3가지 기준을 각각 조합하여 적용하기도 함

- 특혜 원산지 규정

- 특혜 원산지 규정에 속하는 국가는 EU 국가,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ITY) 소속 국가, AGOA(AFRICAN GRWOTH AND OPPORTUNITY)를 체결한 미국 등임
- 법령 : CUSTOMS AND EXCISE ACT 제 46조에 규정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sars.gov.za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남아공은 북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북한에 대한 차별대우 현황이 없음. 즉 남북한 동일하게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북한산 뿐만아니라 일반 국가의 제품에 대한 쿼터 적용도 없음. 일례로 섬유류의 경우 남아공에는 관세율 규정만 있을 뿐이지 따로 쿼터 규정이 없음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내역 : 없음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www.sars.gov.za

다. 특기사항

- 남아공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특별한 차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산지 북한산제품이 대 남아공 수출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 현재 남아공화 강제로 인해 의류 등 값싼 중국산 제품의 남아공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 등 봉제 제품 수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VIII. 쿠웨이트

1. 쿠웨이트의 원산지 기준

- 주재국의 원산지규정

- 원산지 규정만을 다룬 별도의 법령은 없고, 다만 수입규정상에 통관서류의 필수서류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인증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음.

"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producing and/or exporting company and authenticated by a Chamber of Commerce or Exporters/Industrial Association of the exporting country duly certifying and attesting that the exported goods are of _____ Origin, they contain _____ materials and they are being exported from _____. The goods were manufactured by _____. futhermore, this certificate must also contain the name of the factory or plant in which the goods were manufactured and/or the name of the producing company. The certificate of origin must as well show the source of the goods, net gross weight, the recorded trade mark mentioned in the manifest, value, type of packing and transportation medium.

The certificate of origin accompanying goods to be Kuwait must be certified by the Embassy of the the State of Kuwait or the Kuwait Consulate in the exporting country. In case where the State of Kuwait is not represented at the Diplomatic or Consulate levels, the certificate of origin can be validated by any GCC Embassy or Consulate, and if not available, then by Arab Embassy or Consulate except that of Iraq and also should be attested by the Arab-Joint Chamber of Commerce in these countries or by local Chambers if the latter does not exist. It is also possible to the importer in Kuwait to certify noncertified cerficate of origin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uwait. "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http://www.kcci.org.kw>

2. 한국산과 북한산의 차별대우 현황

- 관세율 차이 : 없음
- 북한에 대한 쿼터적용 현황 : 없음
- 기타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
 - 쿠웨이트의 대북한 경제 제재조치는 현재까지 없음.
 - 오히려 주재국은 북한에 대해 Kuwait Fund(개도국 지원기금)에서 2천 만불을 지원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우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 없음(현재 세관당국의 웹사이트가 구축중에 있음)